

**인증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변화 및 제도 보완 사항**

2012. 06. 20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인증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변화 및 제도 보완 사항

연구책임자 : 하연섭 (연세대)
공동연구원 : 문우식 (서울대)
박인우 (고려대)
한유경 (이화여대)
연구보조원 : 임유미 (연세대)

2012. 06. 20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인증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변화 및 제도 보완 사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06. 20

- 주관연구기관명 : 연세대학교
- 연 구 기 간 : 2012. 03. 21 ~ 2012. 06. 20
- 주관연구책임자 : 하 연 섭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3. 연구 방법	2

II.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개요

1. 인증제 추진배경	3
2. 인증제 목적과 기본 방향	5
3. 인증제 추진 경과	6
4. '12년도 인증제의 개요	7

III. '12년 인증제의 주요 내용

1. 1단계 평가	11
가. 정량지표 : 4년제 대학	13
나. 정량지표 : 전문대학	14

다. 정량 지표 상세 내역	15
2. 2단계 평가	18
가. 절대지표의 활용	18
나. 절대지표 설정근거 및 기준	21
다. 절대지표 산식	25
라. (2단계) 자체평가보고서의 활용	28
3. 3단계 평가	30
4. 인증제 운영	31
5. 인증 결과의 활용 및 관리	32

IV.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 유치현황과 문제점	34
2. 주요국의 외국인 학생유치 및 관리정책추세	35
3.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	41

V. 정책 제언

1. 인증제 신청자격 및 대상	43
2. 12년도 지표 및 평가방식 보완	43
3. 절대지표 및 3단계 평가 방식 도입	44

참고문헌 49

<부록 1> 대학 제출자료 안내서(안)	52
<부록 2> 시뮬레이션 결과	59
<부록 3> 대학 제출 의견 및 반영여부 정리	71
<부록 4> 인증제 지표 및 방식 관련 FAQ 안내	74
<부록 5> 외국인 유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79
<부록 6> 권역별 유학생 수	82
<부록 7> 연구진 회의록	85
<부록 8> 인증위원회 회의록	104
<부록 9> 외국인 유학생 관련 주요 언론 기사	112
<부록 10>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설명회 자료	117

표 차 례

<표Ⅱ-1> 외국인 유학생 증가추이 ('12년 목표 10만명)	4
<표Ⅱ-2> 2011년·2012년의 인증제 제도 개선 비교	9
<표Ⅲ-1>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19
<표Ⅲ-2> 전문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20
<표Ⅳ-1> 연도별 유학생 수	34
<표Ⅳ-2> 국가별 유학생 현황 (2011년)	35
<표Ⅴ-1>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47
<표Ⅴ-2> 전문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48

그 림 차 례

<그림Ⅱ-1>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권역별 및 출신국가별 분포도	.. 4
<그림Ⅲ-1> 인증제 신청자격 및 추진방식 30
<그림Ⅲ-2> 인증마크 샘플 3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의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가 가장 중요
- ※ 유학생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는 국제교육부문에 대한 질 관리 강화
- 유학생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 책임은 각 대학에 있으므로 대학의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와 전반적인 국제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의 지표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11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 본격적 시행을 위해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정교화할 필요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의 단계별 평가 방안 마련
 - 1단계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방안 마련
 - 2단계 절대지표에 의한 평가방안 마련
 - 3단계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방안 마련

-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절대지표 도입 방안 마련
 - 유학생 유치·관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소수의 대표적인 절대지표 개발
 - 대학과 인증평가위원회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표 개선
 -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선택
 - 안정성·예측가능성 있는 지표 개발
- 신청대학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 절차 및 방법 개발
- 인증대학에 대한 결과 활용 방안 (인센티브 등) 연구
- 평가 결과 부적격 대학에 대한 처리 방안 연구
- 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정책제언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질 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

나. 전문가 좌담회

-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다. 통계 분석

-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관련 통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지표 간 상대적 비중 조정 및 각 지표의 최소 기준 설정

라. 설명회 개최

-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대학의 의견 수렴

Ⅱ.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개요

1. 인증제 추진 배경

가. 글로벌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필요

○ (내부적 환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인적자원 감소에 따른 해외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의 중요성 증대

* '10년 노동인구 6~7명이 노인 1명 부양 → '30년 노동인구 2~3명이 노인 1명 부양

** 고등학교 졸업인원: '21년 현재의 4/5, '30년 현재의 1/3, '50년 현재의 1/2로 감소예정

○ (외부적 환경) 글로벌 시대, 인적자원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

※ 일본('10년 약 14만명 → '20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중국('10년 약 24만 명 → '20년까지 유학생 50만명 유치), 싱가포르('10년 약 9만명 → '15년까지 유학생 15만명 유치)

나.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부재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우려

○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확산, 정부·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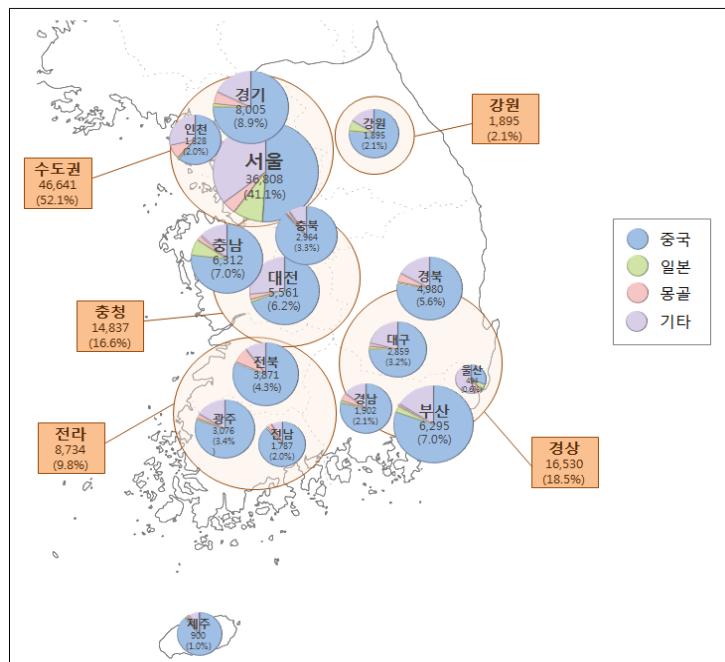
- 그러나, 양적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 활 부 적응 및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수인재 유치에 있어 싱가포르 등 경쟁 국가에 불리해질 우려
 -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66%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및 예비 한국 유학 수요자들 사이에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표 II-1> 외국인 유학생 증가추이 ('12년 목표 10만명)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유학생 수	16,832명	22,526명	32,557명	49,270명	63,952명	75,850명	83,812명	89,537명
증가율		33.8%	44.5%	51.3%	29.8%	18.6%	10.5%	6.8%

* 국가별 현황: 중국 66.2%, 일본 5.0%, 몽골 4.1%, 미국 3.0%, 베트남 2.6%

<그림 II-1>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권역별 및 출신국가별 분포도 (2011.4월 기준)



※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권역: 수도권>경상>충청>전라>강원>제주 順

☞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 활동 지원을 통해 우수 知韓 · 親韓 인재 육성

2. 인증제 목적과 기본 방향

가. 추진목적

- 한국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을 유치하고,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 강화
 - 대학구조조정 방침과 연계하여 일부 부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
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

나. 기본골자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
족하는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으로 인증
 -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차이점을 평가방식에 반영하고 인증신청가능 자격기
준(유학생 규모: 전문대학 10명, 4년제 20명 이상)을 달리 적용
- 인증 대학에 한하여 GKS 사업(학부) 참여자격을 제공하고, 인증결과를 대학정
보공시에 반영하여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 인증대학은 국내 · 외국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영문 공개 가능

다. 인증제 대상

- 국내 350여개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 * 법상 분리되는 분교를 별도 포함하고, 사이버대학 ·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은 제외

라. 추진 체계

인증위원회 (15%)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참여부처가 주관한 민간 전문가, 교과부 및 법무부 담당과장○ 역할: 인증평가단의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인증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부처 실무자, 운영기관 책임자 및 담당자, 평가위원 등○ 역할: 인증 지표개발 및 기준 검토, 서류·현장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협의, 업무처리절차 및 인증대학 지원방안 수립 등
시행기관 (연구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기관으로 지정○ 인증제 운영 실무업무 지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3. 인증제 추진 경과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도입

-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평가 · 인증위원회”(위원장: 충북대 최영출 교수) 발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인증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지표 TF팀을 구성 · 운영

나. ‘11년도 인증제 시행(‘11.5~12)

- 인증위원회 지표 TF 중심 정량·정성지표를 개발(‘11.5~9)
- 지표 및 평가방식(안) 의견수렴을 위한 대학 설명회 개최(‘11.8~9)
- ‘11년도 인증신청 공고 및 정량평가 실시(‘11.9~10)
- 정량평가 결과 상위 5% 대학, 하위 15% 대상 정성평가 실시(‘11.10~12)
 - 우수대학에 대한 민간위원 중심의 현장평가 실시
 - 하위대학에 대한 인증위원, 법무부·교과부 합동 실태조사 실시

다. ‘11년도 인증제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11.12~’12.3)

- ‘11년도 인증제 시행 결과발표(‘11.12월 말)
- ‘11년도 인증대학에 대한 GKS 장학생 우선 배정 및 인증서·인증마크 부여(‘11.12~‘12. 3)
- ‘11년도 하위대학에 대한 컨설팅·시정명령·비자발급제한 조치 및 개선계획 보고서 검토(‘12.1~‘12.3)

4. ‘12년도 인증제의 개요

가. 인증제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 신청자격 미부여
-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에는 인증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격 미부여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3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

※ ‘11년도에는 4년제 138개, 전문대학 44개(총182개)가 인증가능대학에 해당

나. 12년도 지표 및 평가방식 보완사항

○ (평가방식) 평가대상과 자료요청대상 및 자료제출시점을 확정

- 평가대상을 대학정보공시(KEDI 조사)의 유학생 기준과 동일하게 정의
- 유학비자(D-2)외에 동반비자(F) 학생도 포함, 복수/공동학위 및 교환학생은 제외
- 대학제출자료는 인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유학생이 있는 대학 전체에 요청
- 2학기의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율,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및 7월 TOPIK 점수 반영을 위해 9월말로 자료제출 기준일 연장

○ (지표보완) ‘11년도 인증제 시행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반영

-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영어강의 진행대학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어학능력에 한 국어 능력 외에 영어공인능력에 대한 평가 포함
- 2단계 평가시 주요지표 중 중도탈락률을 법무부의 불법체류율과 보완하여 사용(비자제한대학 선정시 불법체류율 우선 고려)
- 기숙사 제공률 평가시 1학년 신입생에 한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평가함으로

써 학년 진급에 따른 학생의 거주지 선택변수 고려

- 국민건강보험 외에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 사보험도 의료보험으로 인정

- (특성화)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대학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

다.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표 II-2> 2011년 · 2012년의 인증제 제도 개선 비교

	2011년도	2012년도
1단계 (정량지표, 설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지표(6개 공시자료, 2개 대학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정량평가 실시- 상대평가 결과 현장평가 후보군을 선정하여 인증 및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8개 정량지표 동일 적용- 단, 1단계 정량평가 결과 상위 70% 이상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 실시 (상대평가 중요성을 약화)
2단계 (정량지표, 설명평가) (‘12년 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절대지표 제시 (2개 공시자료, 4개 대학제출자료) ※ ① 종노달락률 (분법체류율) ②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③ 재정건전성 ④ 의료보험 가입률 ⑤ 신입생 가수사 수용률 ⑥ 언어능력(토박 4급, 영어)- 2단계로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일정 점수 이상 대학에 인증 부여

	2011년도	2012년도
2단계 (전형적 별기)	대학에 소명기회 부여, 평가에 참 고함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성장지표로 평가가 어려운 사유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소명할 기회 부여
3단계 (전형적 별기)	- 1단계 성장평가 결과 상위와 하 위집단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하여 인증대학과 비자체한대학 을 선정	통계수치의 변화가 크거나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대학에 대해 현장 점검을 추가 실시 현장점검 실시 후 2,3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인증대학 및 비 자체한대학 선정

III. ‘12년 인증제의 주요 내용

1. 1단계 평가

- 8개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 2,3단계 평가 실시
※ 참여대학 비율은 인증제 시행에 따라 변경가능
 -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 부여
- 1단계 정량평가의 이유
 - 2단계에 도입하는 절대지표(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의료보험이입률,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 언어능력)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에 관련된 대표 지표라 하더라도 대학의 국제화역량 및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지표를 통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은 낮으나 6개 절대지표만을 충족하려는 일부 대학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표를 활용하는 1단계 평가가 필요
 - 제도 시행 초기에는 모든 대학이 인증을 받게 될 가능성의 낮으므로 2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대학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1단계에 활용할 정량지표의 개요

* 국제화기반지표 3개 (10점)

-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 ②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 ③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전문대는 제외)

* 유치관리역량 지표 5개 (90점)

- ④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비율
 - 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 ⑥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 ⑦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 ⑧ 신입생 유학생 숙소 제공율
- ⇒ 6개 지표는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하고, 2개 지표는 대학이 인증신청시 제출한 자료 및 장학재단·사학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하여 활용

가. 정량지표 : 4년제 대학

연 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 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text{② } \frac{\text{외국인 전임교원 수}}{\text{전체 전임교원 수}} \times 100\% \text{)}$	6 가. 진세 교원 대비 진임교원 현황 6-미.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text{② } \frac{\text{파견인원}}{\text{파견학생 수}} \times 100\% \text{)}$	11-2-2. 외교대학과 교류 현황 4-미. 개별 학생 현황	2.5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text{② } \frac{\text{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text{제작학생 수}} \times 100\% \text{)}$	11-2-2. 외교대학과 교류 현황 4-미. 개별 학생 현황	5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text{외국인 학생의 수} - \text{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text{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text{외국인 학생의 비율} \times \text{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미-1. 외교부 학생 현황 4-미. 개별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중도단학률(이탈율) $\text{중도단학 학생 수} / \text{외국인 재적학생 수} \times 100\%$	4-미-2. 외국인 유학생 중도단학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전체 유학생 수)	4 바 1. 외국인 학생 현황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text{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text{내국인 학}$ $\text{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times 100\%$	8 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장학저학 조사)	20
8	유학생 축소 계약 비율 $(기숙사 수용 신입생 유학생 수) / \text{전체 신입생}$ $\text{유학생 수} \times 100\%$	4 바 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이학리중 재학 조사)	10

나. 정량지표 : 전문대학

연 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 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 가. 국제 교육 대비 현황 교수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0)-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해외 학생 현황	2.5
3	(전문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 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마-1. 외국인 학생 현황 4 마. 해외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종도입학률(○ 담당) 종도입학 학생 수 /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마-2. 외국인 유학생 종도입학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전체 유학생 수)	4 바 1. 외국인 학생 현황 (2012년도 국내 외국 인 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 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 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장학자금 조사)	20
8	유학생 축소 제한 비율 (기숙사 수용 신입생 유학생 수) / 전체 신입생 유학 생 수 × 100(%)	4 바 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기획전략 조사)	15

다. 정량 지표 상세 내역

공시자료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2년 4월 기준)

- 산식: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 전임교원 수 : 해당 대학의 최근 1년간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정보공시 항목: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1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11년도 기준)

- 산식: 해외 파견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 【파견인원 : 자대학교→ 타대학교】 : 타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정보공시 항목: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1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11년도 기준)

- 산식: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 정보공시 항목: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 교환학생의 경우 추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함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12년 4월 기준)

- 산식: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수 평균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수 평균 / 최근 3년간 재적학생 수 × 100(%)

- 정보공시 항목: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1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11년 기준)

- 산식: 중도탈락 학생 수 / 외국인 학생 수 × 100(%)

- 정보공시 항목: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2년 4월 기준)

- 산식: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외국인 학생 수)

- 정보공시 항목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 출처: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대학제출자료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12년 1,2학기기준)

- 산식: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 납입 등록금은 교내 학비감면 외에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 (외부 장학금은 포함)

- 출처: 공시 외 추가 항목

※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은 공시 외 추가 항목 활용

(8) 유학생 신입생 숙소 제공 비율 ('12년 9월 30일 기준)

- 산식: (기술사 수용 신입생 유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학생 수 × 100(%))

- 정보공시 항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 출처: 공시 외 추가 항목

2. 2단계 평가

가. 절대지표의 활용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6개 절대지표를 선정 · 활용
 -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 재정건전성
 - 의료보험 가입률
 -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 언어능력(토픽4급, 영어)
- 6개 절대지표를 제시하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
- 절대지표 중 하나인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보완)’은 기본적 절대지표로 활용
 - 기본적 절대지표는 인증신청자격제한 요건으로도 활용
- 절대지표의 기준치를 설정하여 인증대학 기준과 비자제한대학 기준으로 각각 활용
- 절대지표의 선택적 적용 이유
 - 4년제의 경우 절대지표 6개 중 5개를 충족(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개 중 4개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절대지표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은 대학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 절대지표에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는 각 지표에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혹은 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각 지표에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개별 지표의 적용이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함

(1) 4년제 대학

-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을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률’, ‘신입생 기숙사’, ‘언어능력’으로 설정함
- 4년제 대학은 인증기준 6개 중 5개 이상 충족하거나, 비자제한기준 중 기본적 절대지표를 제외한 4개 중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각 인증대학 후보군과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기본적 절대지표의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20%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와 인증대학 기준 및 비자제한대학 기준은 다음의 <표 III-1>과 같음

<표 III-1>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절대지표	인증대학 기준	비자제한대학 기준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② 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③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95% 이상
④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⑤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⑥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
⑦ 언어능력(도파4급, 영어)	30% 이상	10% 이하

*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 지표는 법무부 불법체류율과 보완 사용하며, 비자제한의 경우 불법체류율 지표를 우선 적용함.

(2) 전문대학

- 전문대학의 절대지표는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을 포함하여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으로 설정함
- 전문대학은 인증기준 5개 중 4개 이상 충족하거나, 비자제한기준 중 기본적 절대지표를 제외한 3개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각 인증대학 후보군과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기본적 절대지표의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20%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전문대학의 절대지표와 인증대학 기준 및 비자제한대학 기준은 다음의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전문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절대지표	인증대학 기준	비자제한대학 기준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②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③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④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⑤ 언어능력(도파3급, 영어)	30% 이상	10% 이하

*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 지표는 법무부 불법체류율과 보완 사용하며, 비자제한의 경우 불법체류율 지표를 우선 적용함.

나. 절대지표 설정근거 및 기준

(1) 4년제 대학

① 중도탈락률(①-1 불법체류율)

-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급속한 양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 부적응,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수 인재 유치에 있어 싱가포르 등 경쟁 국가에 불리해질 우려가 있음
- 나아가, 한국 유학을 경험했거나 중단하고 돌아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 혐한류가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중도탈락률은 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질 관리 지표로서, 유학생 유치·관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
- 최소한의 불가피한 중도탈락을 감안하여 중도탈락률 6% 미만을 인증대학의 기준점수로 설정하였으며, 중도탈락률 6% 미만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 중 하나를 기준을 충족 시켜도 이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함
- 다만, 2단계 평가 시에는 중도탈락률을 법무부의 불법체류율과 보완하여 함께 사용하고, 비자제한대학 선정 시에는 불법체류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비자제한대학은 중도탈락률 20% 이상, 불법체류율 10% 중 어느 하나만 해당 되더라도 비자발급제한 후보대학에 포함됨

②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음.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66.2%를 차지함
- 2011년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출신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59,317	4,520	2,707	2,325	1,574	3,699	15,395	89,537
비율(%)	66.2	5.0	3.0	2.6	1.8	4.1	17.2	1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유학생 출신국가 편향성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다양성을 절대지표로 선정함
- 기준 점수는 현재 국내 외국인유학생 출신국가 현황을 고려하여 90% 미만을 인증대학 기준으로, 95% 이상은 비자제한대학 기준으로 설정함

③ 재정건전성

-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감면하면서까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함
-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더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내국인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평가지표에 포함함
- 그러나, 유사한 교육의 질과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 등록금과 높은 생활비 수준이 외국학생들의 유학대상국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려는 필요함

- 따라서,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대비 외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비율이 80% 이상은 인증대학, 60% 이하는 비자제한대학의 기준 점수로 설정하였음

④ 의료보험 가입률

- 유학생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유학생의 의료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입국 후 건강보험 유지 여부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은 인증대학, 60% 이하는 비자제한대학의 기준점수로 설정함

⑤ 신입생 기숙사

- 유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 숙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학년 진급에 따른 학생의 거주지 선택변수를 고려하여 신입생에 한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평가함
- 학교 내 기숙사의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공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인증대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은 비자제한대학 선정 지표에서는 제외하였음

⑥ 언어능력

-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및 유학생활을 위해서는 언어의 문제

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임.

-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은 한국어로 수업하는 과정과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을 통한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TOPIK과 TOEFL 등 공인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함.
- 언어능력을 재학생 전체의 비율로 측정하며, 30%일 경우 인증대학의 기준으로, 10% 이하는 비자제한대학의 기준으로 설정함.

(2) 전문대학

- 4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외국인유학생 다양성’과 ‘신입생 기숙사’는 전문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제함
-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별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더 바람직하며, 유학생 절대 수가 작기 때문에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이 지표로서의 의미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하였음
- 위의 각 지표별 기준 점수 및 설정 근거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함

다. 절대지표 산식

(1) 중도탈락률 및 불법체류율

<평가지표 산식>

①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교과부)

- 산식: (중도탈락 학생 수 / 외국인 재적학생 수)×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인증) 6%미만, (비자제한) 20% 이상

② 불법체류율(법무부)

- 산식: ('11.7.1~'12.6.30 동안 발생한 불체자 수 / 동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외국인 수)×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인증) 1% 미만, (비자제한) 10% 이상
10% 이상이면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를 고려하여 인증위에서 비자제한 여부 결정
50명 이상 유학생을 초청한 대학으로서, 40% 이상이면 법무부 기준에 따라 비자제한

③ 기존 비자제한 대학에 대한 불법체류율 산식(법무부)

- 산식: ('12.3.1~'12.6.30 동안 발생한 불체자 수 / 유학생 정보시스템 상 '12.6.30 기준 재학 유학생 수)×100%

- 법무부의 불법체류율 산정기준 및 비자제한 기준을 명확히 대학에 안내

※ 최근 1년간 불법체류율('11.7~12.6)을 활용하되, 기준 재학생의 불법체류율

관리하기 위한 볍무부 지표를 조속히 확정하여 대학에 안내

- 유학생 규모가 일정 수 이하로 소수 이탈에도 중도탈락률이 크게 변동하는 학교는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소명

(2)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평가지표 산식>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전체 유학생 수)×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90% 미만이면 인증, 95% 이상이면 비자제한
- 단, 전문대학의 절대지표에서는 제외함

- 양질의 국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년제 대학은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소명

(3)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산식>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 80% 이상이면 인증, 60% 이하면 비자제한

- ODA 장학생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자체평가보고서의 기타 영역을 통하여 소명(1·2단계 평가에서는 전년도와 동일)
- 재정건전성 지표 산정 기준시점을 9월말로 확정

(4) 의료보험 가입률

<평가지표 산식>

- 의료보험 가입률: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자 인원 / 외국인 유학생 총 인원)×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80% 이상이면 인증, 60% 이하면 비자제한

-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질병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유학생 보험 등 민간 사보험도 인정
- 의료보험가입율 기준시점을 9월말로 확정

(5)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

<평가지표 산식>

-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인원+기숙사 외 수용인원 / 전체 신입생 유학생 수)×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25% 이상이면 인증, 비자제한대학 선정 지표에서는 제외함

- 1학년 신입생 유학생에 대한 기숙사 수용률을 전제로 하되, 대학의 기숙사 외 숙소 제공도 대학제출자료를 통해 인정
- 신입생 기숙사 기준시점을 9월말로 확정

(6) 언어능력(토픽 4급, 영어)

<평가지표 산식>

- 언어능력 비율:
[(TOPIK 4급 이상 학생 수 + TOEFL iBT 80이상 학생 수)/2012년 외국인 유학생 총 수(D-2 비자 및 F 비자)]×100%
-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 30% 이상이면 인증, 10% 이하면 비자제한

- 토픽 성적 기준시점을 9월말로 확정하여 '12년도 4월 및 7월 평가 결과도 인정
-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 및 트랙에 대해서는 영어성적을 인정하되 토익성적은 아카데믹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인정

라. (2단계) 자체평가보고서의 활용

-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절대지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대학별 특이사항을 소명
 - 정성적 평가 결과 절대지표 적용의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절대지표에 따라 인증대학 또는 비자제한대학으로 선정
- 자체평가보고서(안)

	영역	세부 복차 (30p 이내)
1	대학 국제화의 미션과 특성	1-1. 대학 국제화의 비전 국제화와 대학발전의 연계 방안 유학생 유치 전략 1-2. 대학의 특성화 - 특화된 국가· 또는 분야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사례
2	유학생 선발	2-1. 학생입학 시 수학능력은 겸용하고 있는가? 2-2. 공식절차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가? 외국인 유학생 충원을 위한 합리적인 신반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3	학사관리	3-1. 출석인수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은 어떠한가? 3-2. 학적관련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분포: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단정하고 있는가? * Random sampling을 통해 현장평가 가능 강의계획표, 학사인정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4	유학생 관리·지원	4-1. 학습지원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 - 진로지도교수기· 대장되어 있는가? 4-2. 상담센터 및 관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가? 상담센터 및 전문 상담원이 있는가? 4-3. 졸업이후의 관리 - 졸업 후 취업, 동문회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4. 적응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 학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가능
5	기타	대학 복지사항

3. 3단계 평가

-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4년제 및 전문대) 중 인증위원회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및 하위대학을 선정
 - 서면자료(대학제출자료 및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대학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 하위대학은 시정명령, 컨설팅 등의 제재를 받는 대학을 의미

<그림 III-1> 인증제 신청자격 및 추진방식



4. 인증제 운영

가. 인증 보증기간 및 재인증

-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만료 대학은 평가 후 재인증 여부 결정
※ 인증 기간은 3년이나, 인증을 통과한 대학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해야 함

나. 현장평가를 위한 인증평가단 및 실태조사단 구성

- 인증위원회 및 교과부·법무부, 연구재단 등으로 평가단 구성
 -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및 자체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일부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
 - 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 5개 권역에 대해 권역별로 위원 2인 및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 ※ 현장평가단은 인증위원회 위원 및 대교협·전문대교협 국제교류부장 등 관련 전문가와 법무부·교과부의 정부합동조사단, 연구재단 등 포함
 - 현장평가 시 평가대상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위원은 제척

다. 인증 및 사후관리

- 3단계 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인증대학 및 하위대학을 선정
 - '12년 제시한 절대지표의 인증기준은 3년 동일로 유지하되, 하위대학에 대한 기준은 1년 단위로 변경
 - '12년 당해연도에는 인증대학이 적을 수 있으나 향후 3년을 목표로 국내 대학 대다수가 역량제고 노력을 통해 인증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정부가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외국정부에 적극 홍보하여 한국유학의 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 하위대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른 향후 1년간의 실적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
- 부실 운영사례 적발 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인증취소 대학의 경우 1년간 인증제 신청 제한)

5. 인증 결과의 활용 및 관리

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센티브) 인증평가 결과를 GKS, 유학박람회 등 대학지원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 추진

○ (제재)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를 위해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제한 실시

나. 인증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하여 대학의 자율관리역량 제고를 유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

○ 국내 및 외국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 결과 제공

- 대학알리미('12년 영문, '13년 중문사이트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11개 언어) 등 교과부 공식 사이트* 등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명시

* 대학알리미 :

www.academyinfo.go.kr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www.studyinkorea.go.kr

** <그림 III-2> 인증마크 샘플



IV.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 유치현황과 문제점

- 2003년 12,314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4년 Study Korea Project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4월 현재 89,537명에 이른

<표 IV-1> 연도별 유학생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주: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만 포함한 수치
이며, 04년도부터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포함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총학생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0.5%에서 2011년 2.4%에 도달
 - 외국인 유학생 비율 : 0.6%('05) → 1.4%('07) → 2.1%('09) → 2.4%('11)
- ※ 2011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등 포함) 총 학생 수 3,735,706명 중 외국인 학생 수는 89,537명
- ※ 등록학생당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호주 24%, 영국 21%로 나타남
-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편향성이 두드러짐
 -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90.2%를 차지
 -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66.2%를 차지

- 향후 외국인 유학생 국적의 다양화가 필요함

<표 IV-2> 국가별 유학생 현황 (2011년)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59,317	4,520	2,707	2,325	1,574	3,699	15,395	89,537
비율(%)	66.2	5.0	3.0	2.6	1.8	4.1	17.2	100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

2. 주요국의 외국인 학생유치 및 관리정책 추세

가. 미국

- 미국의 대표적인 유학생 유치기관은 국무부의 교육문화국 산하 기관인 EducationUSA
 - EducationUSA는 169개국에 400개가 넘은 사무소를 갖고 있음 (Macready & Tucker, 2011: 57)
- 4,000개가 넘은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특정 정부가 대학 국제화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대학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 미국 대학에서 대학 국제화 전략은 개별 기관차원 혹은 학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Bhandari, et al., 2011: 37)

나. 영국

- 2006년 "국제교육을 위한 수상제언(The Prime Minister's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PMI2))"

- ① 영국교육을 국가 브랜드화 하고 해외에 영국대학들을 홍보
- ② 외국인 유학생의 질을 제고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공유
- ③ 학업을 종료한 외국학생들의 구직을 지원
- 2008/9년, 약 415,000명의 외국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의 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12.1%
- 영국의 외국유학생들 분포 : 중국 12.1%, 인도 8.7%, 미국 5.2%, 독일 4.2%, 프랑스 4.2%

다. 독일

- 독일 유학생 유치정책의 특징은 외국 유학생 수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 학생의 질을 극대화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특징
 - 유학생 유치의 편익은 재정수입이 아니라 독일 국내 대학에 국제화된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임 (외국 수학 경험이 없는 약70%의 독일 학생들에게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
 - 또한 잠재적인 박사학위 후보자와 깊은 연구자의 유치,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파트너와 동료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독일 유학생 유치정책의 특징
- 독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독일 정부의 무역정책, 문화정책, 국제협력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Becker et al., 2009: 39)
- 독일 대학들은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나, 단순히 수를 늘이는 것 보다는 우수한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
 - 독일 대학과 산업계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Becker et al., 2009: 43)
 - 독일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무역 및 문화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

- 독일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독일 국내 학생의 국제화와 문화교류 및 무역기회의 확대라는 보다 넓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라. 프랑스

- 프랑스 고등교육을 대외에 홍보하고 외국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1998년 설립한 EduFrance를 확대·개편하여 2007년 Campus France를 설치
 - Campus France는 해외유학생 유치활동을 벌이며, 프랑스 유학의 초기단계부터 모국으로 돌아갈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학생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프랑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의 집행과 더불어 자국의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지표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지침이나 성과지표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침의 준수를 결정하도록 함
- 지침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공시
 - 입학
 - 비자발급
 - 교육의 질
 - 유학생 도착시점에서의 서비스제공
 - 숙박
 - 유학생 귀국시점에서의 서비스제공

마. 네덜란드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마케팅 전담 기관으로서 NUFFIC(the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을 설치·운영
 - 해외에서의 유학생유치와 마케팅은 현재 10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NESO (Netherlands Education Support Office)를 통해 이루어짐
-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유학생에 관련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였고, 이 행동강령에 서명을 한 대학들만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NUFFI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모든 연구중심대학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행동강령에 서명함 (Becker et al., 2009: 30)

바. 호주

- ESOS
 -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ESOS)와 National Code of Practice는 학생지원서비스의 표준, 소비자 보호, 교육공급자의 의무, 등록금에 대한 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호주의 국제적 명성과 외국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
 -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ESOS Act)와 관련된 법안들은 호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됨.
 - 법안의 초점은 질 높은 교육, 수업료 보장, 윤리적인 유치, 학생복지, 불만처리 및 비자 프로그램에서의 성실성 등 호주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2010년에 개정된 ESOS Act에 의해 모든 교육기관들은 2010년 말까지 재등

록이 의무화됨

- 이를 통해 국제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개정법안의 목적

○ CRICOS

-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CRICOS)
- CRICOS는 1,200개를 상회하는 호주의 국제교육기관에 대한 데이트베이스임
- 외국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CRICOS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ESOS Act의 주요 내용은 CRICOS에 국제학생 교육기관의 등록, National Code 목적의 정의, 학생비자 요건 위반 시 교육제공기관의 보고의무, 기록, 에이전트, 소비자보호규정, 등록금 납부 및 환급, 모니터링과 집행권한 등을 포함
- National Code는 등록금 교육제공기관의 운영과 과정의 등록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 15개의 기준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등록과정의 공식화, 에이전트와의 관계, 18세 이하 학생에 대한 복지규정, 불만 및 청원과정, 학생의 이전, 과정에서의 성취와 출석 점검 등을 포함
- CRICOS에서 규정한 교육제공자는 학교, 직업교육, 고등교육, ELICOS, 예비 과정 등 모든 과정을 부문을 포함

○ PRISMS

-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PRISMS)
- CRICOS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이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PRISMS)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학생에 대한 세부정보와 고교육공급자에 관련된 과정 데이터를 포함. PRISMS는 이민관리시스템과 상호 정보교환을 하면서 ESOS Act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학생비자 관련 데이터를 보고

- CRICOS에 등록된 모든 교육기관은 PRISMS에 등록되며, 이 시스템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DIAC) 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됨
- DIAC는 호주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총괄하는 기관
- PRISMS를 통해 호주의 교육기관들은 DIAC에 학생의 비자 신청 전 개별 학생에게 입학허가가 난 사실을 통보
- 이 통보를 통해 등록된 교육프로그램에 입학이 허가되었다는 증거로서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e-CoE)가 생성됨
- e-CoE를 통해 신규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CRICOS에 등록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입학이 허가되었다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교육기관은 PRISMS를 통해 학생이 이탈했을 경우 이를 DIAC에 통보

사. 일본

- 2009년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화거점대학 30개를 선정하여 지원
 -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립행정기구로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국가장학금 사업과 유학생 지원 서비스 사업을 관리하여 국제화의 첨병역할을 담당
- ※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아. 기타 : 비자 속임수 방지를 위한 제도(Anti-fraud measures)】

- 많은 국가에서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학습이외의 목적으로 유학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

※ 영국내무성은 비자발급비용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비자 재심의 요구권 폐지함

자. 대학국제화 성과지표 작성

-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제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중요해짐

※ 국제 품질평가프로그램(International Quality Review Program: IQRP)

: 유럽대학의 학술협력협회(ACA)와 OECD의 고등교육기관관리프로그램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에 의해 개발('99)

3.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국제화 역량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대학에만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검토가 필요

(1)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 마련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허가제

-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대학에만 외국인 유학생을 허가함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 지침으로 확대 개정
- 외국인 학생의 이탈시 법무부/외무부 통지하고 학생비자 취소 및 해당학생 출국조치
- 해당대학은 지침의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증발급 제한

(2) 인증제를 통해 사증발급 제한

- 인증제 결과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제한
※ 외국인 학생 이탈율이 일정 %를 넘는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 제한
- 국제화역량 미달대학을 공시

(3) 중국 이외의 국가로 유학생을 다변화

- 단일국가의 외국인 학생 수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

나. 대학국제화지표의 개선

- 국제화 지표는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수 두 가지 양적 지표만 반영됨
→ 질적 지표의 활용이 필요

다. 국제적 질관리 체제의 수립

- 고등교육의 국제적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 질 보증을 위한 협력강화 필요
※ UNESCO와 OECD가 함께 마련한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구축 → 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추진체제 형성

V. 정책제언

1. 인증제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 신청자격 미부여
-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에는 인증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격 미부여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3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

※ '11년도에는 4년제 138개, 전문대학 44개(총182개)가 인증가능대학에 해당

2. 12년도 지표 및 평가방식 보완

○ 평가대상과 자료요청대상 및 자료제출시점을 확정

- 평가대상을 대학정보공시(KEDI 조사)의 유학생 기준과 동일하게 정의
- 유학비자(D-2)외에 동반비자(F) 학생도 포함, 복수/공동학위 및 교환학생은 제외
- 대학제출자료는 인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유학생이 있는 대학 전체에 요청
- 2학기의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율,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및 7월 TOPIK 점수 반영을 위해 9월말로 자료제출 기준일 연장

- '11년도 인증제 시행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 보완
 -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영어강의 진행대학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어학능력에 한국어 능력 외에 영어공인능력에 대한 평가 포함
 - 2단계 평가시 주요지표 중 중도탈락률을 법무부의 불법체류율과 보완하여 사용(비자제한대학 선정시 불법체류율 우선 고려)
 - 기숙사 제공률 평가시 1학년 신입생에 한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평가함으로써 학년 진급에 따른 학생의 거주지 선택변수 고려
 - 국민건강보험 외에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 사보험도 의료보험으로 인정
-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대학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

3. 절대지표 및 3단계 평가 방식 도입

가. 1단계 평가

- 8개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 2,3단계 평가 실시※ 참여대학 비율은 인증제 시행에 따라 변경가능
 -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 부여

* 국제화기반지표 3개 (10점)

-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 ②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 ③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전문대는 제외)

* 유치관리역량 지표 5개 (90점)

- ④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비율
- 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 ⑥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 ⑦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 ⑧ 신입생 유학생 속소 제공율

⇒ 6개 지표는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하고, 2개 지표는 대학이 인증신청 시
제출한 자료 및 장학재단·사학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하여 활용

나. 2단계 평가

(1) 절대지표의 활용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6개 절대 지표를 선정·활용
 -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 재정건전성
 - 의료보험 가입률
 -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 언어능력(토픽4급, 영어)
- 6개 절대지표를 제시하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인증 및 비자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

- 절대지표 중 하나인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보완)’은 기본적 절대지표로 활용
 - 기본적 절대지표는 인증신청자격제한 요건으로도 활용
- 절대지표의 기준치를 설정하여 인증대학 기준과 비자제한대학 기준으로 각각 활용

(2) 4년제 대학

-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을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률’, ‘신입생 기숙사’, ‘언어능력’으로 설정함
- 4년제 대학은 인증기준 6개 중 5개 이상 충족하거나, 비자제한기준 중 기본적 절대지표를 제외한 4개 중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각 인증대학 후보군과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기본적 절대지표의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20%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와 인증대학 기준 및 비자제한대학 기준은 다음의 <표 V-1>과 같음

<표 V-1>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절대지표	인증대학 기준	비자제한대학 기준
(1)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1)-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2)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95% 이상
(3)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4)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5)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6) 언어능력(도파4급, 영어)	30% 이상	10% 이하

*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 지표는 법무부 불법체류율과 보완 사용하며, 비자제한의 경우 불법체류율 지표를 우선 적용함.

(3) 전문대학

- 전문대학의 절대지표는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을 포함하여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으로 설정함
- 전문대학은 인증기준 5개 중 4개 이상 충족하거나, 비자제한기준 중 기본적 절대지표를 제외한 3개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각 인증대학 후보군과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기본적 절대지표의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20%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전문대학의 절대지표와 인증대학 기준 및 비자제한대학 기준은 다음의 <표 V-2>와 같음

<표 V-2> 전문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절대지표	인증대학 기준	비자제한대학 기준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② 재정진전성	80% 이상	60% 이하
③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④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
⑤ 외어능력(토익3급, 영어)	30% 이상	10% 이하

* 기본적 절대지표인 중도탈락률 지표는 법무부 불법체류율과 보완 사용하며, 비자제한의 경우 불법체류율 지표를 우선 적용함.

다. 3단계 평가

-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4년제 및 전문대) 중 인증위원회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및 하위대학을 선정
 - 서면자료(대학제출자료 및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대학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 하위대학은 비자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등의 제재를 받는 대학을 의미

참 고 문 헌

- 김문석·김현수·채호형. (2012).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재정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김우종. (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최영출·한유경·문우식·하연섭·박인우. (2011).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인증 지표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하연섭. (2008).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편)*. 「*한국교육평론 2008: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186–200. *한국교육개발원*.
- 하연섭·나태준·구민교. (2010). 「‘10년 GKS 장학생 선정 방안 및 GKS 장학생 선정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하연섭·이남국. (2010). 「정부초청장학생사업 및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 하연섭·이남국. (2011).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 하연섭·문우식. (2012). 「2단계 Study in Korea 추진 방안 설계」. *교육과학기술부*.

Adams, Tony, Melissa Banks, and Alan Olsen. (2011). “International Education in Australia: From Aid to Trade to Internationalization.” in Rajika Bhandari and Peggy Blumenthal (eds.), *International Students and Global Mobility in Higher Education: National Trends and New Directions*. 107–2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Becker, Rosa, Veronica Lasanowski, Helen Goreham, Don Olcott, Jr., Steve Woodfield, Robin Middlehurst, and Joan-Anton Carbonell. (2009). *UK Universities and Europe: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London:

UK Higher Education Europe Unit & International Unit.

- Bhandari, Rajika and Peggy Blumenthal. (2011). "Global Student Mobility and the Twenty-First Century Silk Road: National Trends and New Directions." in Rajika Bhandari and Peggy Blumenthal (eds.), *International Students and Global Mobility in Higher Education: National Trends and New Directions*. 1–23.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handari, Rajika, Riasa Belyavina, and Robert Gutierrez. (2011). *Student Mobility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from Six World Regions*. New York: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Bode, Christian and Martin Davidson. (2011).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 European Perspective from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Rajika Bhandari and Peggy Blumenthal (eds.), *International Students and Global Mobility in Higher Education: National Trends and New Directions*. 69–82.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oskett, Nick. (2010). "Global Markets, National Challenges, Local Strategies: The Strategic Challenge of Internationalization." in Felix Maringe and Nich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35–50. New York: Continuum.
- Fosket, Nick and Felix Maringe. (2010).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 Prospective View." in Felix Maringe and Nich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305–17. New York: Continuum.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1). *Open Doors: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 Macready, Caroline and Clive Tucker. (2011). *Who Goes Where and Why? An Overview and Analysis of Global Educational Mobility*. New York: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Maringe, Felix. (2010). "The Meanings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E: Findings from a World Survey." in Felix Maringe and Nich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17–33. New York: Continuum.
- Maringe, Felix and Nich Foskett. (2010). "Introduction: Globalization and Universities." in Felix Maringe and Nich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1–13. New York: Continuum.
-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 Taylor, John. (2010).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in Felix Maringe and Nich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97–108. New York: Continuum.
- Taylor, John. (2010). "The Response of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to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in Felix Maringe and Nich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83–96. New York: Continuum.
- Vincent-Lancrin Stéphan. (2009).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Trends and Perspectives." in OECD, *Higher Education to 2030. Vol. 2: Globalisation*. 63–88. Paris: OECD.

부록 1. 대학 제출자료 안내서(안)

①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학 교 구 부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총 수(ʌ)	한국어 사용*			영어 사용**			언어능력 비율(%) ((B-1)+(C-1)) / A X 100
		TOPIK 4급 이상 학생 수 (B-1)	TOPIK 4급 미만 학생 수 (B-2)	소 계 (B)	TOEFL iBT 80이상 학생 수(C-1)	TOEFL iBT 80미만 학생 수(C-2)	소 계 (C)	
(L)	(Q)	(Q)	(P)	(S)	(E)	(T)	(S)	(Q)

<작성 방법>

-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등
- ② 외국인 유학생 : 1) 2012년 4월 1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 기준)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 * 한국어 사용(B): 한국어로 수업하는 과정으로 졸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 ** 영어 사용(C):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으로 통한 졸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 입학전형 어학능력 심사 시 한국어가 아닌 영어능력에 따라 합격한 학생 수
- ③ TOPIK 4급이상 학생 수: 한국어 사용 과정으로 입학한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학생 수
- ④ TOPIK 4급미만 학생 수 : 한국어 사용 과정으로 입학한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수
- ⑥ TOEFL iBT 80 이상 학생 수: 영어 사용 과정으로 입학한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학생 중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 이상 취득한 학생 수
- ⑦ TOEFL iBT 80 미만 학생비율(%): 영어 사용 과정으로 입학한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학생 중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 이상 취득하지 못한 학생 수

②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 (기준일) '12년 1학기, '12년 2학기 평균

- (제출양식)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

학교 부분	산출 기준 내국인 학생 수(명)	내국인 학생 납입 등록금 총액	내국인 학생 장학금 수혜액	산출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명)	외국인 유학생 납입 등록금 총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액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1)	(2)	(3)	(4)	(5)	(6)	(7)	(8)

<작성 방법>

-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등
- ② 2012년도 1학기 내국인 학생 수 + 2학기 내국인 학생 수
- ③ 2012년도 1학기 내국인 학생 납입 전체 등록금 + 2학기 내국인 학생 납입 전체 등록금
 - “내국인 학생 납입 등록금 총액”은 각 학기별로 장학금 등의 감면 전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제출(등록금(C) = 수업료(A) + 기성회비(B) / 단, 입학금은 제외)

* 예시) 등록금 고지서

고지 내역	수업료 (A)	기성회비 (B)	등록금 (C-A-B)	장학금 (D)	실 납부액 (E-C-D)
'2012 1학기'	***원	***원	***원	***원	***원

④ 2012년도 1학기 내국인 학생 수혜 장학금 + 2학기 내국인 학생 수혜 장학금

- 내국인 학생 대상 장학금(교외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교내 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중 교내 학비감면, 내부장학금(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만 포함
- * 장학금 수혜액은 “재정건전성” 지표의 등록금(학비) 감면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내부 장학금과 외부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중 학비감면 금액만 포함. 생활비 지원 등은 제외.
- 장학금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포함하지 않음

⑤ 2012년도 1학기 외국인 학생 수 + 2학기 외국인 학생

⑥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1학기 납입 전체 등록금 + 2학기 납입 전체 등록금

- “외국인 유학생 납입 등록금”은 각 학기별로 장학금 등의 감면 전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등록금(C) = 수업료(A) + 기성회비(B) / 단, 입학금은 제외)
- * 예시) 등록금 고지서

고지 내역	수업료 (A)	기성회비 (B)	등록금 (C=A+B)	장학금 (D)	실 납부액 (E=C-D)
· 2012 1학기	※※원	※※원	※※원	※※원	※※원

⑦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 총액

- 장학금(교외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교내 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중 교내 학비감면, 내부장학금(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만 장학금에 포함
- * 장학금 수혜액은 “재정건전성” 지표의 등록금(학비) 감면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내부장학금과 외부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중 학비감면 금액만 포함. 생활비 지원 등은 제외.
- 장학금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국가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학교 재정과 별도로 지원하는 장학금(GKS 장학금 등)은 학비감면이 아니므로 수혜 총액에서 제외
- ⑧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전성=외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 $\frac{((\text{⑥}-\text{⑦}) \div \text{⑤})}{((\text{③}-\text{④}) \div \text{②})} \times 100(\%)$
- ※ 외국인 학생이 정원 외로 입학이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감면하면서까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더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내국인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지표로 포함
- ※ 외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과 비교하는 항목으로,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학생에게 일률적인 등록금 감면 등을 해주고 있지는 않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③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및 의료보험율

○ (기준일) '12년 1학기, 2학기(2012. 9월 말일 기준)

○ (제출양식)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

학과/전공	외국인 유학생 '12년도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총 인원	기숙사 수용 인원	기숙사 외 수용 인원	총 인원	가입 인원
(1)	(2)	(3)	(4)	(5)	(6)

<작성 방법>

- ① 4년제 대학/전문대학 등
- ② 외국인 유학생 '12년도 신입생
- ③ 기숙사 수용인원: 인증제 대상 외국인 학생 중 '12년도 신입생(편입생 제외)에 대한 현황을 제출
※ 인증제 대상 외국인 학생 = 전체 외국인 학생 - (대학원생 + 어학연수생 + 기타연수생*)
* 기타연수생 :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 숙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입생에 대한 숙소제공율로 평가
- ④ 해당학교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 중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가 지원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학생 수
※ 학교에서 지원하여 기숙사 외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판단 여부는 숙소의 계약자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가 주체인 경우로 한정

⑤ 외국인 유학생 총 인원 :

- 1) 2012년 4월 1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 (등록 후 휴학한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
 -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 ⑥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인원: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또는 병원진료비 등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예. 유학생 보험) 가입자 수

부록 2. 시뮬레이션 결과

※ 인증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11년도 평가결과 자료임

- 각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T 점수로 환산)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획득 점수를 합산, 총점을 산출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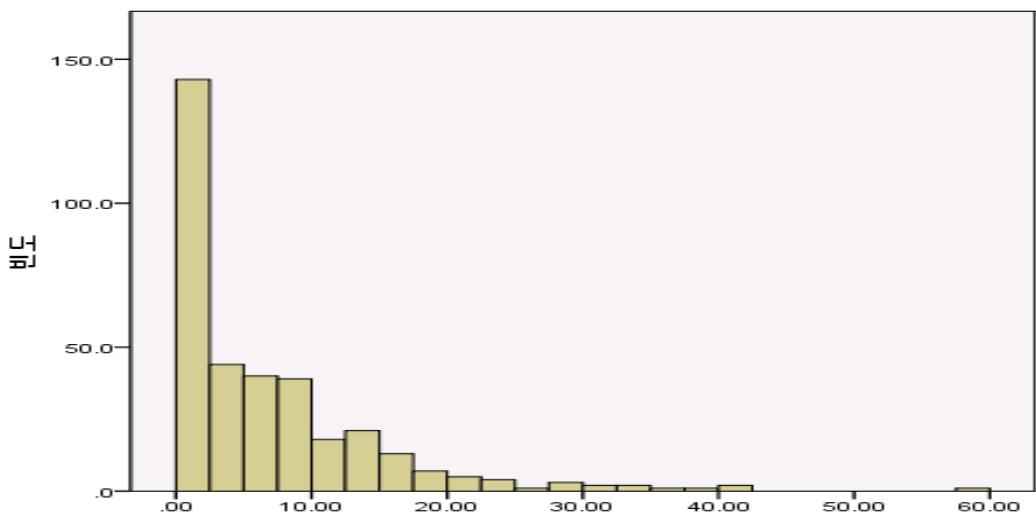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중위 수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94	6.71	4.61	0.00	8.31	0.00	59.81	0.00	4.61	9.57
국내 대학교원	201	27	8.54	6.11	0.00	9.09	0.00	59.84	1.80	6.11	12.13
전체 대학교원	146	67	4.20	1.41	0.00	6.30	0.00	39.53	0.00	1.41	6.15

【산출공식】



$\text{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frac{\text{외국인 전임교원 수(명)}}{\text{전체 전임교원 수(명)}} \times 100$	자료	-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	---



□ 해외파견 학생 수 및 비율

○ 해외파견 학생 수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중위 수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152	87.35	6.00	0.00	181.38	0.00	1245	0.00	6	83
국내 대학	201	52	137.98	52	0.00	222.50	0.00	1245	0.00	52	181
국내 전문대학	146	100	17.64	0.00	0.00	66.26	0.00	568	0.00	0.00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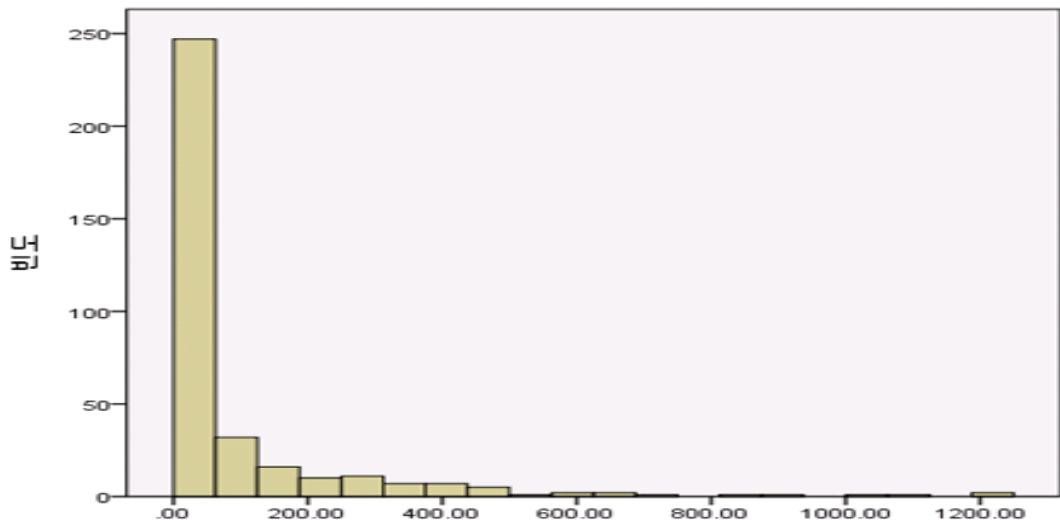
【산출공식】



대학교: 타 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전문대학: 해외 현장실습 파견인원

자료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해외 파견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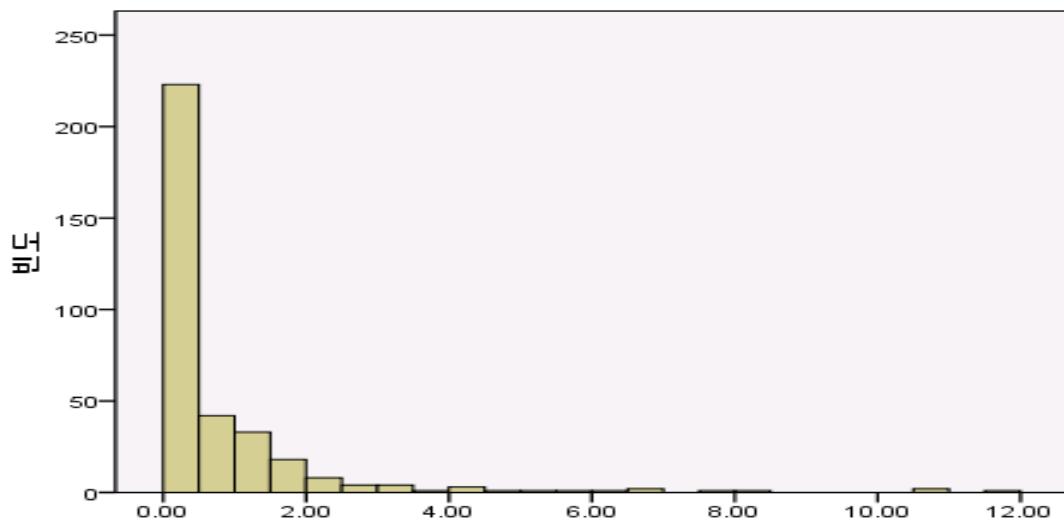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중위 수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134	0.77	0.17	0.00	1.54	0.00	11.50	0.00	0.17	0.94
부 대학교	201	52	0.97	0.50	0.00	1.48	0.00	11.50	0.00	0.50	1.33
분 진문대학	146	82	0.49	0.00	0.00	1.57	0.00	10.89	0.00	0.00	0.23

【산출공식】



$\text{해외 파견 학생 비율} (\%) = \frac{\text{파견 학생 수(명)}}{\text{재적 학생 수(명)}} \times 100$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4-마. 재적 학생 현황
--	--------	--



□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전문대학 자료는 제외)

○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증위 값	최민 값	표준 편차	최자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대학교환학생	201	66	71.81	15	0.00	198.44	0.00	2179	0.00	15	6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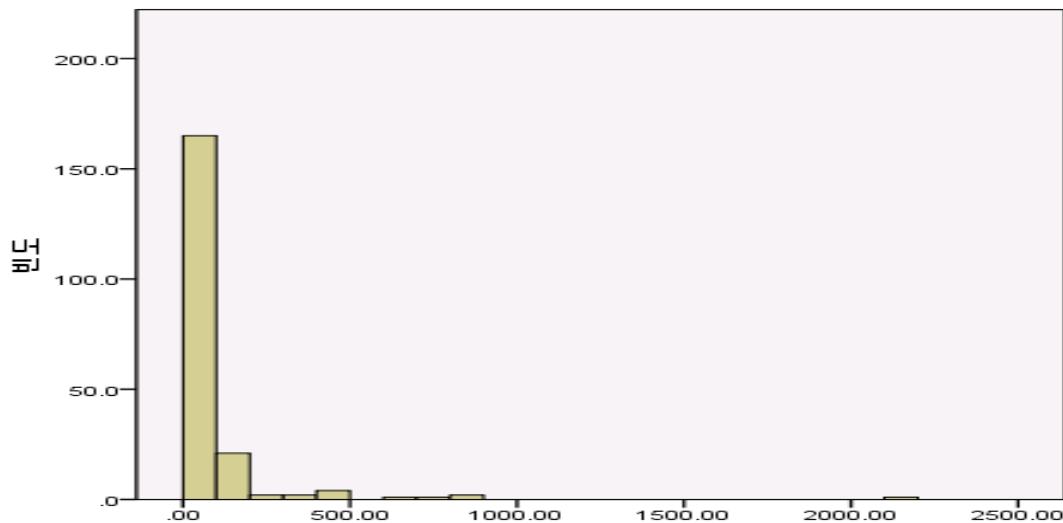
【산출공식】



교환학생: 국내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외국인
학생 수

자료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 4-마. 재직 학생 현황



○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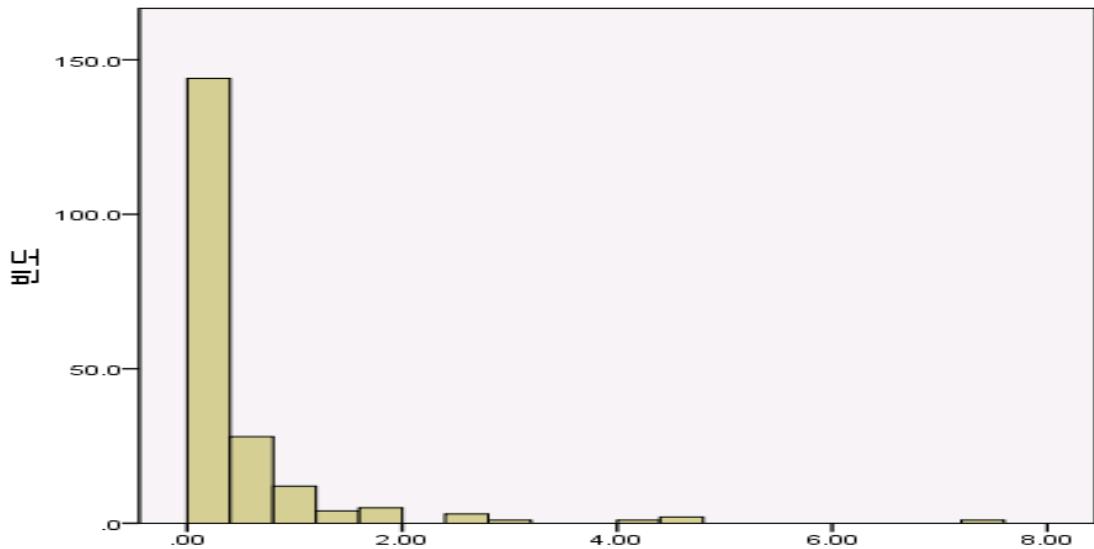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총위 값	최민 값	표준 편차	최자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대학교	201	66	0.44	0.16	0.00	0.89	0.00	7.58	0.00	0.16	0.47

【산출공식】



$\text{해외 교환 학생 비율} (\%) = \frac{\text{국내 교환 학생 수(명)}}{\text{재적 학생 수(명)}} \times 100$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4-마. 재적 학생 현황
---	--------	--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단위 : 명]

구분	학교수		평균	충원 수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자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273	59.72	0.00	0.00	178.54	0.00	1188	0.00	0.00	0.00
부 분	대학교	201	133	100.78	0.00	0.00	225.15	0.00	1188	0.00	0.00
	전문대학	146	140	3.17	0.00	0.00	24.28	0.00	273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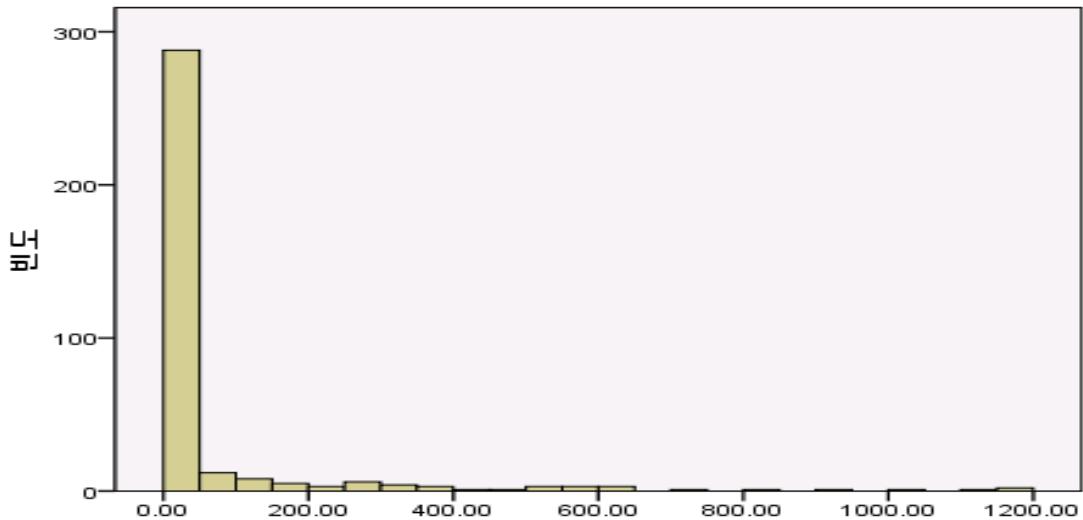
【산출공식】



순수 충원 수: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
원 내 미충원 수

자
료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4-마. 재적 학생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중위 값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53	0.16	0.13	0.00	0.44	0.00	3.80	0.00	0.01	0.06
국내 대학교수	201	14	0.14	0.01	0.01	0.15	0.00	0.07	0.00	0.01	0.02
	146	39	0.37	0.10	0.00	0.62	0.00	3.80	0.00	0.10	0.48

【산출공식】



순수 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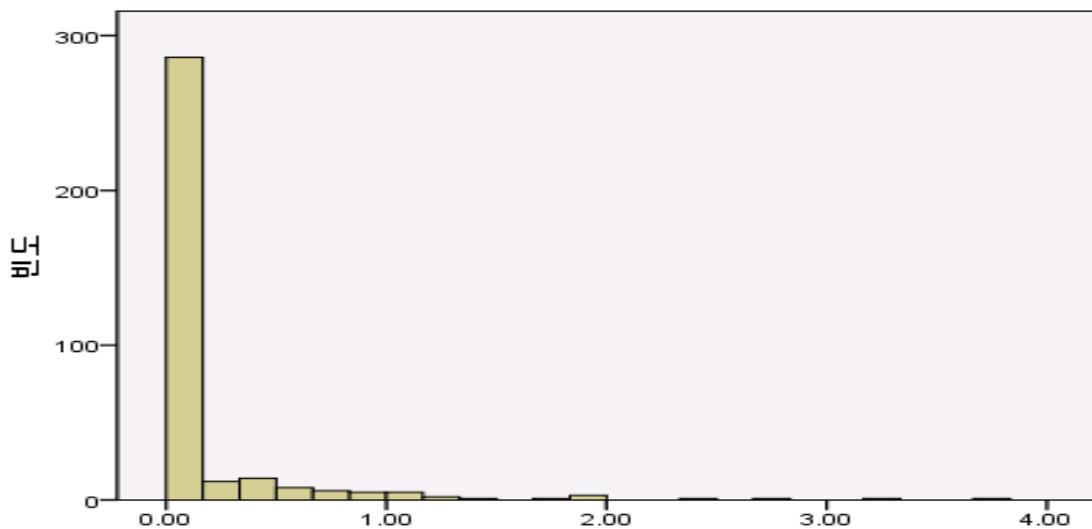
외국인 학생의 비율 ×

비율(%) =

국내 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자
료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4-마. 재적 학생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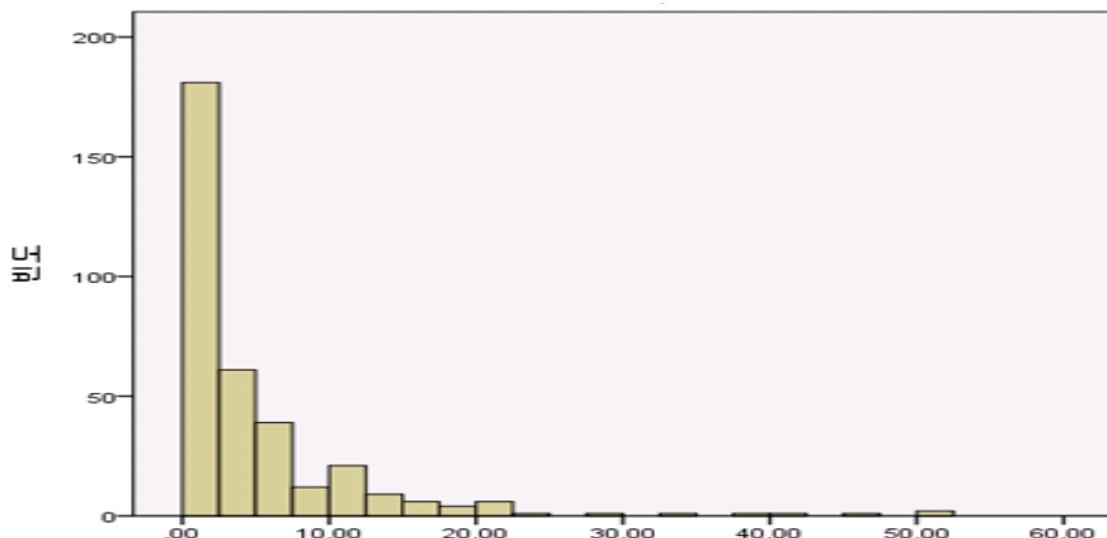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중위 값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161	4.52	1.75	0.00	7.38	0.00	50.00	0.00	1.75	5.88
국적	내국인	201	58	4.73	3.70	0.00	6.29	0.00	50.00	0.00	3.70
	외국인	146	103	4.23	0.00	0.00	8.68	0.00	50.00	0.00	4.61

【산출공식】



$\text{탈락율} (\%) = \frac{\text{중도 탈락 학생 수(명)}}{\text{외국인 학생 수(명)}} \times 100$	자료	-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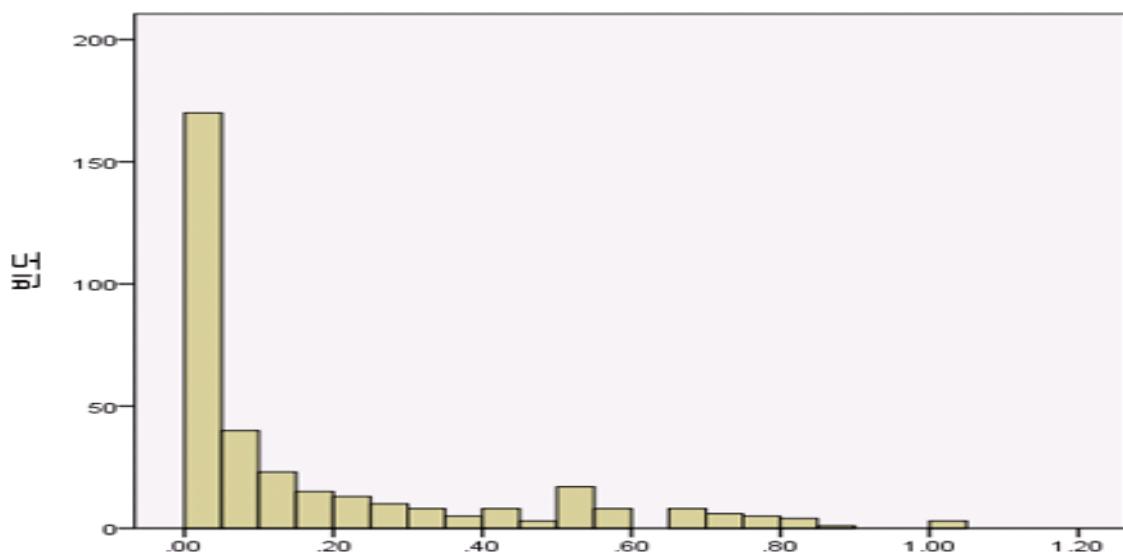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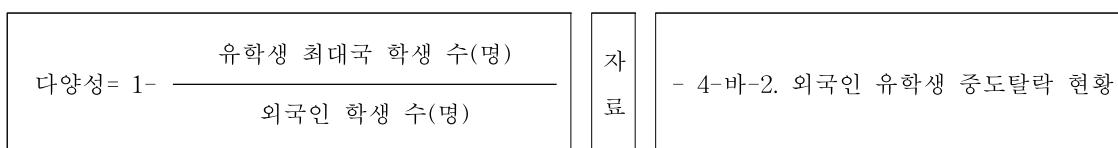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중위 값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127	0.16	0.06	0.00	0.24	0.00	1.00	0.00	0.06	0.24	
국적	내국인	201	36	0.20	0.09	0.00	0.24	0.00	1.00	0.16	0.09	0.29
	외국인	146	91	0.12	0.00	0.00	0.22	0.00	1.00	0.00	0.00	0.17

【산출공식】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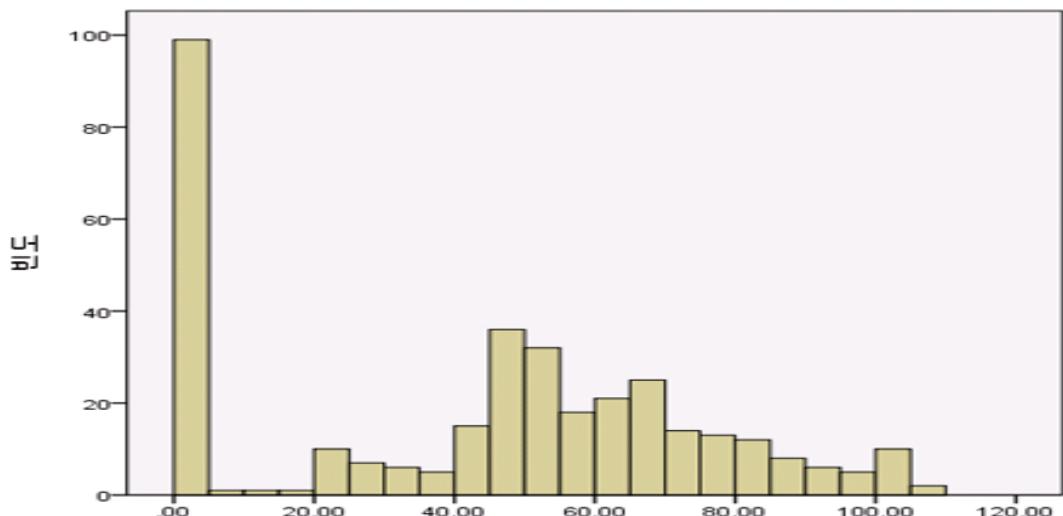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중위 값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98	43.03	49.63	0.00	32.13	0.00	108.56	0.00	49.63	66.20
국내외 유학자	내외교	201	30	50.71	52.65	0.00	27.75	0.00	108.56	41.88	52.65
	전국·내외	146	68	32.44	23.23	0.00	34.73	0.00	102.76	0.00	23.23

【산출공식】

$$\text{재정 건전성} = \frac{\text{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text{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times 100$$

→ 자료 - 8-차. 등록금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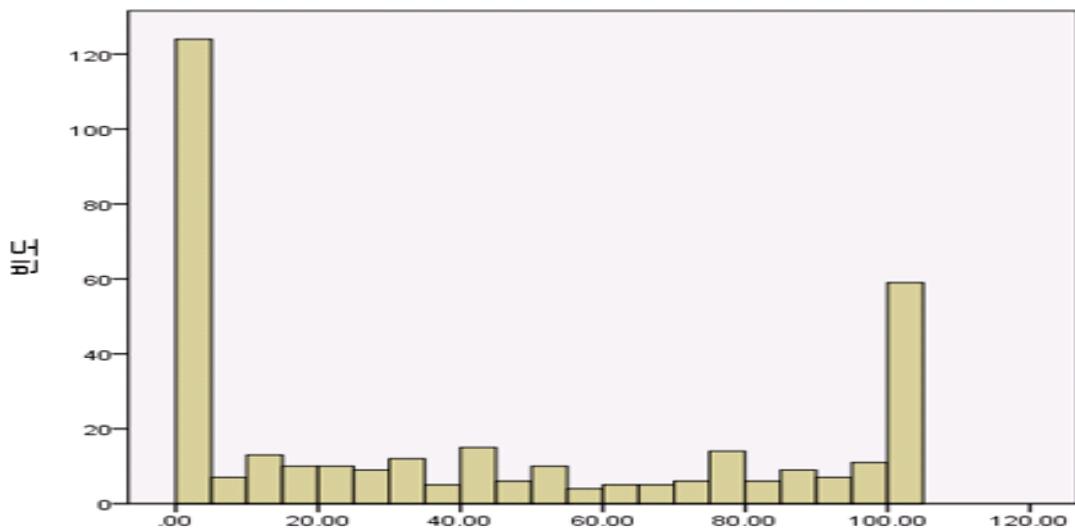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학교수		평균 수	중위 값	최빈 값	표준 편차	최저 값	최고 값	백분위수		
	전체	0값							25	50	75
전체	347	118	40.65	30.26	0.00	40.12	0.00	100.49	0.00	30.26	84.48
국내 대학교직원	201	38	44.70	40.19	0.00	37.68	0.00	100.49	9.13	40.19	85.36
	전체(내 대학)	146	80	35.08	0.00	0.00	42.77	0.00	100.00	0.00	0.00

【산출공식】

$$\text{제공비율} = \frac{\text{기술사 수용 유학생 수} + \text{기술사 외 숙소 지원 인원}}{\text{외국인 학생 수}} \times 100$$

→ 자료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부록 3. 대학 제출 의견 및
반영여부 정리**

지 표	대학 제출 의견	검토 의견	비 고
언어능력	TOPIK 기준일자 조정 (평가 기준일은 9월도)	TOPIK 기준일자를 9월 말일로 조정 (조정할 경우 7월 시험 성적까지 반영됨)	반영
재정건전성	‘12학년도 2학기 등록금 청산을 위하여 지표 기준일을 조정 (9월 초 → 10월 초)	2학기 추가 등록 및 문화부 부반영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필요. (9월 말일 기준)	반영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이 달성을 하기 위해 80% 이상이과는 절대지표가 적정 수준인지 고려 요청	대학에 달성을 권장하는 기준으로서 유지. 다만 ODA 상학생 및 우수학생에 대한 상학금은 소명을 통해 인정	미반영
불법체류율	불법체류율 산정시 이학연 수생 제외 필요.	불법체류율은 법무부에서 산정하는 자료로 교과부에서 임의로 자료 주출 불가능	미반영
	법무부 산정 불법체류율은 대학에 신속히 안내할 필요.	불법체류율의 산정과 공개는 법무부의 권한인. 다만 6월 말 불법체류율 통계의 산정이 완료되면 개별문의 대학에 법무부에서 안내할 계획임	미반영
신입생 기숙사	학부 전체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표를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년이 온과갈수록 기숙사 보다 외부 숙소를 선호하는	미반영

	(신입생 밖으로 기숙사 수용율을 볼 경우 2학년 이상 학생들의 수용율이 낮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경향이 매우 강한	
	학교, 부자 등의 사정상 기숙사를 찾는 대신 기숙사 외의 숙소를 학교가 지원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기숙사가 아닌 기숙사 외 숙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동 지포의 설정 취지를 충족한다면 인정. 다만 기숙사 외 숙소의 내익에 대한 차별제준을 요구	반영
의료보험 가입율	건강보험 대신 민간 유학생 보험 등도 인정하였으면 하는	감기 등 병원 진료비 등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도 포함.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험보장내역의 첨부를 요구	반영

**부록 4. 인증제 지표 및 방식 관련
FAQ 안내**

구 분	대학 질의	교과부 답변
인증제도 운영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는 학교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유학생 인증제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공시자료 이외의 경량자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는 학교라도 10월초도 예정되어 있는 자료 제출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제도 운영	유학생 인증제의 신청대상 유학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학부과정 학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기준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인증제도 운영	신청 대상과 관련 본교와 별교로 나뉘 대학의 경우, 본·별교 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까?	법상 본·별교로 나뉘어져 있는 9개 대학을 제외하고, 인증은 신청하는 대학을 통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증제도 운영	교년에 인증을 신청하였다가 인증이 안 되는 경우 분이어야 있습니까?	인증을 신청하였지만 인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 분이아님은 없습니다. 또한 인증대학도 아니고 하위대학도 아닌 중간그룹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분이아님은 없습니다.

인증제도 운영	<p>유학생 규모가 일정 수(10명) 이상인 대학은 정량평가 자료 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저희 대학은 현재 외국인 유학생 모 집을 안 하고 있으며, 현재 재 학, 휴학 등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혀 없습니다.</p>	<p>외국인 유학생이 0명인 경우 에는 인증제 평가 대상에 해 당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 니다.</p>
인증제도 운영	<p>우리학교는 작년 9월에 '12학 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열심히 노력해 서 올해 9월에 선정되는 학자 금 대출제한대학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날 경우 인 증제 지원이 가능한지요?</p>	<p>올해 9월에 발표되는 '13학년 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제 외 될 경우 인증제 지원이 가 능합니다.</p>
인증제도 운영	<p>저희 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 으로 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어 학적을 취득한 학생들이 있습니 나.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학할 당시의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 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한국어학적이기 때 문에 외국인 유학생에 포함시 키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p>	<p>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학적으로 바뀐 학생에 대해 서는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자료와 일치시키면 될 듯 합니다. 교환학생은 포함이 안 됩 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수에 대 한 기준은 대학알리미 위 역 자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학알리미의 외국인</p>

	<p>다른 질문은, 인증제 기준이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교환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p>	<p>인 학생 암력 아무도 확인하시면 됩니다.</p>
인증제도 운영	<p>절대지표 중 ① 종도탈락률과 ②-1 문법체류율 모두 비자제한대학은 아니나 인증대학으로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②-③지표(5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인증대학에 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p>	<p>절대지표 6개 중 5개를 충족한다면 인증대학후보국에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족하지 못한 1개의 절대지표는 최소 중간그룹(비자제한대학 기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의 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5가지 지표를 충족하고 종도탈락율 및 문법체류율 지표가 중간그룹 이상이라면 인증대학 후보국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p>
문법체류율	<p>문법체류율 산정시 어학연수생 및 대학원생도 포함되나요?</p>	<p>문법체류율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증제와는 별도로 어학연수생 및 대학원생도 포함됩니다.</p>
수업생 기숙사 제공율	<p>기숙사 수용 인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p>	<p>“기숙사 수용 인원”이란 기숙사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입니다.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아닌을 양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지표의 납입 등록금 총액에 기숙사 비 등록금이 되나요?	기숙사비는 등록금이 아닌 사용료(설비 보상)이므로 제외합니다.
자체평가보고서	상단센터는 멀도의 망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 공간에서 상당코너 차별 공간을 확보 및 지정하여 운영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단센터에 대한 멀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나만 유학생업무 처리 요령의 기준(50인 이상시 전단직원, 200명 이상시 전단조직 설치)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의를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성확히 어떤 학생의 경우에 TOEIC(TOFLE) 점수가 인정되나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입학할 때 TOPIK으로 어학능력을 삼사하였으나, 실제로 학부수업은 영어 강의를 많이 (이것 또한 기준이 없음) 듣고 있다면 이 학생은 영어능력 점수를 반영할 수 있는건가요? 극적으로 관계없이 외국인 학생이 TOPIK 4급 혹은 TOEFL 80점 이상 소유했다면 누군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에 대한 지표는 학생이 어떠한 과정(입학전형, 이학능력 신사 시, 이때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에 입학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전형시 어학능력으로 한국어 능력으로 학적한 과정에 입학한 경우 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 능력으로 학적된 과정에 입학한 경우 TOEFL iBT 80 이상을 충족하여야 지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TOEIC는 제외입니다.

부록 5. 외국인 유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을 보다 내실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유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과 의견은 유학생 교육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만 활용됩니다. 각 물음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

- | | | |
|-------------|-------------------------------------|-----------------------------------|
| 1. 전공 | _____ 전공(학과) | |
| 2. 입학연도와 학기 | 년 | 학기 |
| 3. 입학 목적 | <input type="checkbox"/> ① 학위 취득 | <input type="checkbox"/> ② 문화 체험 |
| | <input type="checkbox"/> ③ 자기 계발 | <input type="checkbox"/> ④ 취업 |
|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 |
| 4. 성별 | <input type="checkbox"/> ① 남 | <input type="checkbox"/> ② 여 |
| 5. 출신국가 | <input type="checkbox"/> ① 중국 | <input type="checkbox"/> ② 일본 |
| | <input type="checkbox"/> ③ 동남아시아 | <input type="checkbox"/> ④ 영미권 국가 |
|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 |
| 6. 한국체류기간 | <input type="checkbox"/> ① 1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년~2년 |
| | <input type="checkbox"/> ③ 2~3년 | <input type="checkbox"/> ④ 3~4년 |
| | <input type="checkbox"/> ⑤ 4년 이상 | |

다음은 대학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영지 않다)	개의 ('영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영지 한다)	
1. 임학관 제 기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	2	3	4	5
2. 전공 과정과 대체로 구성은 적절하였다	1	2	3	4	5
3. 영어 강좌, 외국인 교수 강좌 등 국제화 교육이 우수하다	1	2	3	4	5
4.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학교측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5. 수업 분위기는 좋았다	1	2	3	4	5
6. 성적 평가가 합리적이다	1	2	3	4	5
7. 지도교수와 학사지도는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8. 나는 우리 대학의 교수진에 대해서 만족하다	1	2	3	4	5
9. 수업 시설과 설비는 좋았다	1	2	3	4	5
10. 대학홈페이지와 온라인 학사행정 시스템에 만족하다	1	2	3	4	5
11. 전공 학생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였다	1	2	3	4	5
12. 선후배와 후배회의 유대가 좋았다	1	2	3	4	5
13. 기초사 제공이 잘 되고 있다	1	2	3	4	5
14. 법의사실(후처실, 서당, 노서관 등) 이용은 원활하였다	1	2	3	4	5
15. 등록금 대비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높다	1	2	3	4	5
16. 교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친절하다	1	2	3	4	5
17. 학교는 학생과의 의사소통(간의사항 수용 등)에 적극적이다	1	2	3	4	5
18. 행정지원과 학사운영은 적절하였다	1	2	3	4	5
19. 나는 우리 대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1	2	3	4	5
20. 나는 다시 대학을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 권역별 유학생 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학위과정)

□ 연도별 유학생 수

(2011. 4. 기준)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생수(명)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 유학형태별 현황

(2011. 4. 기준)

구 분	자비유학	대학초청	우리정부 초청	외국정부 파견	기타 (교환학생 등)	합계
학생수(명)	75,325	8,504	2,513	573	2,622	89,537
비 율(%)	84.1	9.5	2.8	0.6	2.9	100

□ 국가별 현황

(2011. 4. 기준)

구 分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명)	59,317	4,520	3,699	2,707	2,325	1,574	15,395	89,537
비 율(%)	66.2	5.0	4.1	3.0	2.6	1.8	17.2	100

□ 16대 권역별 유학생 수

(2011. 4. 기준)

권역	유학생 수			
	학위과정 (대학원 제외)	학위과정 (대학원 포함)	비학위과정	소계
서울	13,856	22,007	14,801	36,808
부산	3,729	5,056	1,239	6,295
대구	1,781	2,345	514	2,859
인천	853	1,287	541	1,828
광주	1,728	2,579	497	3,076
대전	2,806	4,325	1,236	5,561
울산	105	383	111	494
경기	4,148	5,681	2,324	8,005
강원	1,031	1,445	450	1,895
충북	1,976	2,471	493	2,964
충남	4,087	5,005	1,307	6,312
전북	2,333	3,174	697	3,871
전남	1,344	1,583	204	1,787
경북	3,186	4,088	892	4,980
경남	1,072	1,495	407	1,902
제주	606	729	171	900
합계	44,641	63,653	25,884	89,537

* 학위과정(대학원 제외): 대학원, 비학위과정(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을 제외한 학생의 수

* 학위과정(대학원 포함): 비학위과정(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을 제외한 학생의 수

부록 7. 연구진 회의록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책연구진

제1차 회의자료

2012. 3. 8.

더 레스토랑

I. 인증제 실시의 방법 및 절차

1. 인증제 실시의 절차

가. 정량지표에 절대점수 설정

- 절대점수를 상회한 대학만 1차 예선 통과

나. 절대지표의 설정

(1) 절대지표 (안):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TOPIK 4급 이상 학생의 비율

의료보험 가입 학생의 비율

(2) 절대지표 적용의 방법

- ① 각각의 절대지표에 대해 절대 값은 설정
 - ② 6개 절대지표 중 5개를 만족시키는 대학만 2차 예선 통과
- * '11년 모범사례로 평가된 대학은 2차 예선만 통과하면 인증 부여 (3년 유효)

다.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한 점수로 인증 여부 결정

- 1) 제출한 지표 값이 의심스러운 대학과 경계선상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만 현장 실사 실시
- 2) 정성평가에는 의무화된 것 이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징적인 사항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 부여 대학의 수

- 인증의 유효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여 올해는 인증제 대상 대학의 약 1/3 ~ 1/2 수준에서 인증되도록 대학 숫자를 조정

3. 쟁점

- 1) 정성평가에서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2) 향후(1년 후, 2년 후) 기준치를 상향할 것인가?
- 3) 향후(1년 후, 2년 후)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것인가? (예: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외국인 졸업생 대상 진로 조사)

Ⅱ. 연구진 역할 분담(안)

하연섭: 총괄

박인우 교수, 한유경 교수: 1차 예선 통과의 기준선 설정

2차 예선 통과의 기준선 설정

본선 통과의 기준선 설정

문우식 교수: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논리적 근거

최영출 교수: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절차와 방법

Ⅲ. 보고서 예상 목차

서론 (하연섭)

2.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논리적 근거 (문우식 교수)

3.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절차와 방법 (최영출 교수)

4.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의 논리적 근거 (박인우 교수)

5. 절대지표 및 절대기준의 논리적 근거 (한유경 교수)

6. 정책제언 (하연섭)

IV. 향후 일정

2차 회의 : 3/15(목) 혹은 3/19(월)

- 인증제 절차 및 방법 확정
- 절대기준 확정

※ 화면을 볼 수 있는 회의장 필요

3차 회의 : 3/22(목)

- 기타 쟁점에 대한 처리

4차 회의 : 4/4(수) 혹은 4/9(월)

- 설명회 준비 점검

설명회 : 4/9(월) 혹은 4/12(목)

※ 4/11이 국회의원 선거일임을 고려할 필요 있음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책연구진

제1차 회의록

2012. 3. 8. 11:45-13:45

더레스토랑

참석자 : 문우식 교수, 박인우 교수, 하연섭 교수, 한유경 교수 (정책연구진)
김진형 과장, 권민경 사무관 (교과부)

I. 인증제 실시의 방법 및 절차

1. 인증제 실시의 절차

가. 정량지표에 절대점수 설정

- 절대점수를 상회한 대학만 1차 예선 통과

나. 절대지표의 설정

(1) 절대지표 (안):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TOPIK 4급 이상 학생의 비율

※ 영어 track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영어점수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구상하기로 함

의료보험 가입 학생의 비율

(2) 절대지표 적용의 방법

① 각각의 절대지표에 대해 절대 값은 설정

② 6개 절대지표 중 5개를 만족시키는 대학만 2차 예선 통과

※ '11년 모범사례로 평가된 대학은 2차 예선만 통과하면 인증 부여 (3년 유효)

다.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한 점수로 인증 여부 결정

1) 제출한 지표 값이 의심스러운 대학과 경계선상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만 현장 실사 실시

2) 정성평가에는 의무화된 것 이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징적인 사항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정성평가는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자료를 허위 제출한 대학에 대한 제재 방법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2. 인증 부여 대학의 수

- 인증의 유효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여 올해는 인증제 대상 대학의 약1/3 ~ 1/2 수준에서 인증되도록 대학 숫자를 조정

3. 쟁점

(1) 정성평가에서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 1) 기준치 설정 작업 결과를 2차 회의에서 박인우 교수와 한유경 교수가 각각 발표하고 연구진(안)을 만들기로 함
- 2) 이 작업을 위해 박인우 교수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연구진과 공유하기로 함

(2) 향후(1년 후, 2년 후) 기준치를 상향할 것인가?

- ※ 1) 향후 기준치의 상향 조정 문제는 지표의 최소 값(기준)을 설정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 이상적인 수치의 구체적인 값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함
 - 3) 향후(1년 후, 2년 후)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것인가? (예: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외국인 졸업생 대상 진로 조사)
-
- ※ 1)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졸업생 대상 진로 조사는 올해부터 당장 실시하기로 함
 - 2) 설문문항에 한국에서의 취업의향,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문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3) 설문을 위해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format을 제공하고, 설문의 실시는 대학이 담당하도록 함
 - 4) 대학별 설문과 KEDI의 설문을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설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함
 - 5) 설문의 방법과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진에서 논의하기로 함

Ⅱ. 연구진 역할 분담(안)

하연섭 : 총괄

박인우 교수, 한유경 교수 : 1차 예선 통과의 기준선 설정

2차 예선 통과의 기준선 설정

본선 통과의 기준선 설정

문우식 교수 : 지표의 정교화 작업 (특히, 재정건전성 지표, 중도탈락률 지표),
영어 track의 인정 및 이에 따른 영어 기준 점수 설정,
대학별 특성화 방법

최영출 교수 :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논리적 근거, 절차 및 방법

Ⅲ. 보고서 예상 목차(안)

1. 서론 (하연섭)
2.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의 논리적 근거, 절차 및 방법 (최영출 교수)
3. 지표의 정교화 및 정성지표의 수정·보완 (문우식 교수)
4.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의 논리적 근거 (박인우 교수)

5. 절대지표 및 절대기준의 논리적 근거 (한유경 교수)

6. 정책제언 (하연섭)

IV. 향후 일정

2차 회의 : 3/19(월) 11:00-14:00

- 인증제 절차 및 방법 확정
- 절대기준 확정
- 장소 :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회의를 갖기로 함

3차 회의 : 3/22(목) 11:00-14:00

- 기타 쟁점에 대한 처리
-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혹은 더레스토랑

4차 회의 및 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함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책연구진

제2차 회의록

2012. 3. 19 (월) 11:00-12:50

국립국제교육원 3층 회의실

참석자 : 최영출 교수, 문우식 교수, 박인우 교수, 하연섭 교수, 한유경 교수 (정책
연구진)

김진형 과장, 권민경 사무관, 이경민 주무관 (교과부)

인증평가를 원칙적으로 3단계로 진행하기로 함.

1단계

- 기존의 수부족, 탈락률, 대출제한 제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
- '11년 사용했던 동일한 정량지표로 전체 대학의 상위 70%에게 신청자격 부여
- 1단계를 통과한 대학들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야 함 (공시자료가 아닌 자료)

2단계

- 절대기준을 적용
- 절대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으므로 3년 후를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
- 절대기준은 작년 인증대학이 통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
- 절대지표

중도탈락률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 학생 비율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언어능력

※ 언어능력은 TOPIK 4급 이상 비율 + 영어 일정 기준 이상 학생의 비율로 하기로 함

※ 영어 기준 점수를 한유경 교수가 다음 회의에서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함

※ 절대지표 기준의 예 (하연섭 교수 제안)

중도탈락률 : 6% (148개교)

유학생 다양성 : 0.20 (64개교)

재정건전성 : 80% (59개교)

의료보험 가입 학생 비율: 80%

- 새로운 지표 추가 예정 : 박인우 교수께서 학사관리 관련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로 하다

- 총 7개 지표 중에 통과를 위해서는 몇 개 지표(5개 혹은 6개)를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simulation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함

3단계

- 원칙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 방식은 작년 방식 (정량점수 + 정성점수 합산)으로 하되 정량과 정성의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책연구진

제3차 회의록

2012. 3. 22. 10:30~12:10

이화여대 본관 소회의실

참석자 : 박인우 교수, 하연섭 교수, 한유경 교수 (정책연구진)

권민경 사무관 (교과부)

1. 정성평가의 방법

- 대학으로 하여금 유학생 유치·관리의 목표(비전)을 제시하게 하고, 이 목표에 따른 세부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 세부계획에는 학생모집, 관리/지원, 학사관리, 특성화 계획을 포함
 - 학사관리는 정량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므로, random sampling을 통해 파악
- 각 영역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 학생모집 : 선발자격, 절차 (format)
 - 관리/지원 : 전담조직, 사후관리체계, 지원체계(상담, 어학지원, 만족도, 취업상황, 동문회 운영 등)
 - 학사관리 : 출결, 학적관리
 - 특성화

- 정성평가는 구조화가 가능하며, 인증위원회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의 format (보고서의 구성, 페이지 수 제한 등)을 대학에 제시
- (가칭) 유학생 유치/관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인증위원회 평가 후 의심스러운 대학에 대해서만 현장평가

2. 인증유효 기간

- 인증평가 : 3년
- 비자발급제한 : 1년

3. 절대평가의 방법

- 학사관리는 대학의 전략적 행위의 가능성 때문에 절대평가 지표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절대지표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하기로 함
 -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 재정건전성
 - 의료보험
 - 언어능력
 - 기숙사
 - 다양성

○ 인증 방법

- 절대평가지표 6개 중 5개 통과 : 인증대상 후보군으로 3차 인증위원회 평가 대상

○ 비자발급제한 대학 지정 방법

- 절대평가지표 중 5, 6개 미충족: 자동 비자발급 제한
- 절대평가지표 중 3, 4개 미충족: 인증위원회에서 검토 후 비자발급 제한(현장 평가 포함)

4. 절대평가의 기준

○ 중도탈락율

- 인증평가 : 6%
- 비자발급제한대학에는 불법체류율을 활용하기로 함

○ 재정건전성

- 인증평가 : 80%
- 비자발급제한대학 : 60%

○ 의료보험 가입률

- 인증평가 : 80%
- 비자발급제한대학 : 60%

○ 다양성

- 인증평가 : 10%
- 비자발급제한대학 : 5%

○ 기숙사

- 인증평가 : 15% (혹은 1학년 기숙사 수용률 25%)
- 비자발급제한대학 : 5%

○ 언어능력

※ 추후 결정하기로 함

5. 향후 일정

- 박인우 교수께서 연구진이 구상한 절대기준에 의할 경우 각각의 기준 충족 수에서 인증평가 및 비자발급제한대학이 몇 개 포함되는지(명단 포함) simulation 하기로 함.
- 제4차 회의는 4월 9일(월) 오후 2:00 이내 본관 소회의실에서 갖기로 함
- 제5차 회의는 4월 12일(목) 오전 10:30에 갖기로 함
- 대학 대상 설명회는 4월 19일(목)에 갖기로 잠정 결정하고 장소는 한양대(잠정)에서 하기로 함.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책연구진

제4차 회의록

2012. 4. 9. 14:00-15:10

이화여대 본관 소회의실

참석자 : 박인우 교수, 하연섭 교수, 한유경 교수 (정책연구진)

권민경 사무관 (교과부)

박진일 팀장, 신광수 선생님 (한국연구재단)

- 4년제 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함.

	인증대학	미자체한대학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②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95% 이상
③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④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⑤ 신입생 기숙사	25% 이상	-
⑥ 언어능력	30% 이상	10% 이하

- 4년제 대학의 인증 방법

- 인증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제시된 6개의 기준 중 5개를 충족하여야 함.
- 중도탈락률 6% 미만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 중 하나를 충족시켜도 이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하기로 함.

- 언어능력은 재학생 전체의 비율로 측정하기로 함.

○ 4년제 비자발급제한 대학 선정 방법

-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은 기본적인 절대지표로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절대지표의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급제한 후보 대학에 포함됨.
- 중도탈락률 20% 이상 혹은 불법체류율 10% 이상의 어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비자발급제한 후보대학에 포함됨.
- 비자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절대지표에는 기본적인 절대지표(중도탈락률 혹은 불법체류율)을 제외하고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의료보험가입률, 언어능력이 포함됨.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은 비자제한대학 선정 지표에서는 제외)
- 4개 절대지표 중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비자발급제한 후보대학에 포함됨.
※ 2012년 비자발급제한 대학은 9월까지 자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자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2013년 비자발급제한 대학 선정 여부를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전문대학의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함.

	인증대학	비자제한대학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② 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③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④ 의료보험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⑤ 언어능력	30% 이상	10% 이하

※ 4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절대지표에서 외국인유학생 다양성과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을 제외

-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별 특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함.
- 전문대학의 경우 유학생 절대 수가 작기 때문에 신입생 기숙사 수용률이 지표로서의 의미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

○ 전문대학의 인증 방법

- 인증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제시된 4개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여야 함.
- 중도탈락률 6% 미만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 중 하나를 충족시켜도 이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하기로 함.
- 언어능력은 재학생 전체의 비율로 측정하기로 함.

○ 전문대학의 비자발급제한 대학 선정 방법

-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은 기본적인 절대지표로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절대지표의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급제한 후보 대학에 포함됨.
- 중도탈락률 20% 이상 혹은 불법체류율 10% 이상의 어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비자발급제한 후보대학에 포함됨.
- 비자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절대지표에는 기본적인 절대지표(중도탈락률 혹은 불법체류율)을 제외하고 재정건전성, 의료보험가입률, 언어능력이 포함됨.
- 3개 절대지표 중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비자발급제한 후보대학에 포함됨.

○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 페이지 수의 한도를 30페이지로 하기로 함.
- 1번 제목을 대학국제화의 비전과 특성화로 변경하고 세부내용을 국제화와 대학발전의 연계와 유학생 유치 전략을 포함시키기로 함.
- 유학생 관리/지원과 학사관리의 순서를 바꾸고, 유학생 관리/지원에 적응지원 프로그램, 상담센터, 그리고 취업지원 및 동문관리를 포함시키기로 함.

부록 8. 인증위원회 회의록

제 1회 「외국인 유학생 인증위원회」 결과보고

< 대학선진화과, '12. 4. 13. >

□ 개최개요

- 일시/장소: '12. 4. 12(목), 10:30~12:30 / STX 건물 지하 만복쉼
- 참석자: 대학선진화관, 위원장 (최영출 교수) 포함 인증위원
- 안건 1. '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 운영계획(안)
2. '12년도 인증제 인증지표 및 평가방식 심의

□ 주요내용

- '12년도 인증제 운영계획이 도입 시행한 '11년도와 비교하여 현장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보다 정교화되어 타당성이 제고됨
 - 절대지표 6개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과 비자제한이 적용되면서 개별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허용됨
- 인증지표에 관한 논의
 - 전문대학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었는데, 학생관리에 있어 기숙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포함이 바람직
 - 법무부 불법체류율은 유학생 관리의 절대지표이므로 불법체류율이 높으면 여타 지표결과와 관계없이 비자제한 조치 필요
 - 언어능력은 학업적용 및 유학생활 적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표이므로 대

학의 한국어 지원 및 어학심사가 중시되어야 함

- 자체평가보고서가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제화 노력을 반영하는 중요자료이므로 취업 및 생활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

□ 향후 계획

- 유학생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가 중요하므로 KEDI의 유학생 통계 정교화를 요청 (KEDI 통계본부장 구자역 위원의 적극 수용)
- 제5차 TF회의(4.16)에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계획 확정
- 4년제 및 전문대학 국제처 관계자 대상 대학설명회(4.19, 한양대)

제 2회 외국인 「유학생 인증위원회」 결과보고

< 대학선진화과, '12. 4. 19. >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2. 4. 19(목), 14:00~17:30 / 한양대학교 HIT 건물
- 참석자 : 대학지원실장, 대학선진화과장, 위원장 (최영출 교수) 포함 인증위원
- 안건 1.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2. '12년도 인증제 대학설명회* 현장의견 취합 및 정리

* 대학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설명회 자료 700부를 배포

□ 주요내용

[안건 1]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심의

- (인력계획) 향후 10년간 석박사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이 요청됨
- (정의)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
 - 고등교육 경쟁력을 논할 때 연구의 수준인지, 교육의 수준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국제화를 하는 경우 교육 중심의 특성화된 학부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 QS 지수에 의거, 우리나라 대학들이 200위권 안에 5개에 해당되는데 최근 증가 추세로 보아 상당한 발전임

- 국제화는 ① 경쟁 ② Recognition ③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 교육서비스수지 적자 감소는 목표라기보다는 기대효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력양성의 개념에서 국제화에 접근할 필요
- (질 관리) 미국의 경우 사회가 요구했기에 대학평가인증제가 잘 기능했지만 한국사회에서도 그러할지는 회의적임. 한국현실에 맞는 고등교육 질 보증 시스템 정착이 필요

[안전 2] 대학설명회 대학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인증제 시행에 관한 내용

- 재정건전성, 기숙사 수용률 등의 지표의 경우 학생들의 대학등록이 9월 말이 되어야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을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조정

○ 인증지표 및 실무 관련 의견 반영

- 의료보험율의 경우 질병이 커버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국민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도 인정
- 외국인 유학생 수는 대학알리미 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D-2 비자 외에 F비자도 포함
- 교내 학비감면은 등록금 중 감면을 통한 장학금 지급을 말하여 생활비, 근로 장학금은 해당되지 않음
- 영어공인능력시험에 토익은 인정하지 않으며, 토익은 비즈니스 어학능력이므로 학문적 소양능력과 다름

- 토픽의 ‘12년도 7월 시험 인정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입학시 검증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향후 계획

- 전문대학 국제교류부서장 협의회 의견 수렴 및 인증제 설명(4.26)
- 4년제 대학국제교류협의회 의견 취합 및 접수(4.26~5.7)
- 대학공문배포 및 의견수렴(4.30~5.7)
- 인증제 지표 및 평가방식 확정을 위한 제3회 인증위원회 개최(5.10)
- ‘12년도 확정지표를 4년제 및 전문대학에 공문발송(5월 중)

제 3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 결과보고

< 대학선진화과, '12. 5. 10. >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2. 5. 10(목), 10:00~13:00 / STX 건물 지하
- 참석자 : 위원장 (최영출 교수) 포함 위원 총 11명
 - *[붙임]
- 안건 : 심의안건 1건
 - '12년도 인증제 인증지표 및 방식 확정(안)

□ 주요내용

[안건] '12년도 인증제 인증지표 및 방식 확정(안)

- (의미 명료화) 인증 대학과 미인증 대학(중간 그룹 및 하위 대학)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안내할 필요
 - ①인증 대학에는 GKS, 유학박람회, 대학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지원사업과 연계된 혜택 제공
 - 미인증 대학 중 ②중간 그룹(인증 대학도 부실 대학도 아닌 경우)은 별도의 혜택 또는 제재를 받지 않음

- 미인증 대학 중 ③하위 대학은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
- (유인 제공) 인증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통해 대학에 인증 받을 유인을 보다 강하게 제공
- (사후 관리) 하위 대학이 역량을 제고, 장기적으로 인증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부록 9. 외국인 유학생 관련
주요 언론 기사**

□ 유학생 장사 하는 엉터리 대학 속아내야

- 언론사 : 중앙일보
- 보도일시 : 2011. 9. 29
- 주요내용 :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양 및 질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시

대학의 마구잡이식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제동이 걸릴 모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증을 따내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하위 5%로 평가된 10~15개 대학은 유학생 유치용 비자발급이 제한돼 아예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9000여 명으로 2005년 2만2000여 명에 비해 네 배 이상 급증했다. 내년엔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가 확실시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국제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 인력을 끌어들여 고급 인적자원으로 양성·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친한(親韓)·지한(知韓)과 인사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은 아직 형편없다는 점이다. 일부 지방대학들이 미달된 정원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학생이 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일부 경영 부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장 장사’를 해 연명한다는 얘기마저 나올 판이다. 국내 대학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장삿속으로 유학생을 끌어들여 돈이나 벌려는 엉터리 대학은 걸러내야 마땅하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안착과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기껏 불러들인 외국인 유학생이 불편 없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가 되려면 이제 양이 아니라 질이다.

□ “한국 찾는 유학생 증가세 둔화 우려”

- 언론사: 연합뉴스
- 보도일시: 2012. 2. 9
- 주요내용: 무분별한 중국 유학생 유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가 둔화

가파르게 증가해온 국내 유학생 수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됐다.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장은 9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막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이하 한대협) 주최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많은 나라가 유학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전망했다.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스터디 코리아’ 등 유학생 유치정책에 따라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2006년 3만2천557명, 2008년 6만3천952명, 2010년 8만3천537명 등으로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왔지만 작년에는 8만9천537명으로 6.8%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대협 회장이기도 한 김 원장은 “미국, 호주 등 경쟁국이 외국인 유학 유치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첫 인상이 되는 한국어교육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어 교육이 유학생 유치의 기본”이라면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중심으로 대학, 대학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은 중국 유학생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출신국의 편중,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대학들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등을 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해 등록금을 절반 가량 깎아주거나 입학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학생 중 절반 가량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등 이미 사회적인 문제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포함해 36곳을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국내에서 교육 환경의 열악함을 느낀 외국인 학생이 늘면 늘수록, 앞으로 한국에 대한 유학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근 IMI교육컨설팅 대표도 “외국인 유학생이 2007년까지 급증하다가 이미 2008년 이후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며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형 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은 인증제 도입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서 “인증제의 평가지표를 옮기는 좀 더 정교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입학 때 한국어능력시험 3급, 졸업 때 4급을 요구하는 기준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과부 선정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인 연세대 원주 캠퍼스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성공 사례도 소개됐다.

한대협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발족한 협의체로, 현재 14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캠퍼스엔 인민일보, 식당엔 양고기 볶음…요즘 한국 대학가!

- 언론사 : 조선일보
- 보도일시 : 2012. 4. 14
- 주요내용 : 해마다 늘어나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관리대책 필요

서울의 OO대 정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중국 음식점 간판에는 '佑成中國人之家(우성 중국인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 '중국집'에 짜장면은 아예 없고 중국식 백반이 주 메뉴다. 주 이용층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 유학생이 대부분이다. 기숙사 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 특히 배달 주문이 많다고 한다.

가게 주인 왕조(25)씨는 2007년 한국에 와 현재 OO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다.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창업을 결심했다." 왕씨는 "중국 유학생 친구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술집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꽤 된다"고 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캠퍼스 안팎 풍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에서 나아가 왕씨처럼 아예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09년 처음으로 5만명을 넘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숫자는 2010년에는 5만7783명, 지난해에는 5만931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6%에 달하는 숫자다. 주로 경영대나 공대에 중국 유학생들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국문과까지 중국인 유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 OO대의 경우 지난해 국문과 정원 282명 가운데 중국인 학생이 84명에 달했고, 지방의 한 국립대학은 몇년 전 중국 유학생 비율이 내국인 비율을 앞지르자 대학원 과정에 유학생이 전체 1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중략)

하지만 일부에선 아직 문화적인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숙사나 원룸에선 '중국 학생들이 떠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 학생을 꺼리기도 한다. 서울 회기동에서 부동산을 하는 김모(40)씨는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모여서 떠드는 경우가 많다면 집주인들 중 10% 정도는 중국 학생들을 아예 안 받는다"고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신종호 연구위원은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이유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유학생 범죄 늘고 있지만…뾰족한 대책 없어

- 언론사 : 매일경제
- 보도일시 : 2012. 3. 9
-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부실 지적

어제(8일) 명문대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집단으로 마약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관리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원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OO대학교에 다니는 카자흐스탄에서 유학하러 온 N 군 등 세 명은 기숙사에서 신종마약을 투여했습니다.

OO대는 학칙에 따라 이들을 기숙사에서 내보내고 이들을 제적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그것도 기숙사에서 신종 마약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불안하기만합니다.

▶ 인터뷰 : A 대학생

- "밤에 다닐 때도 (외국인들을) 피해 다니고,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고…."

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유학생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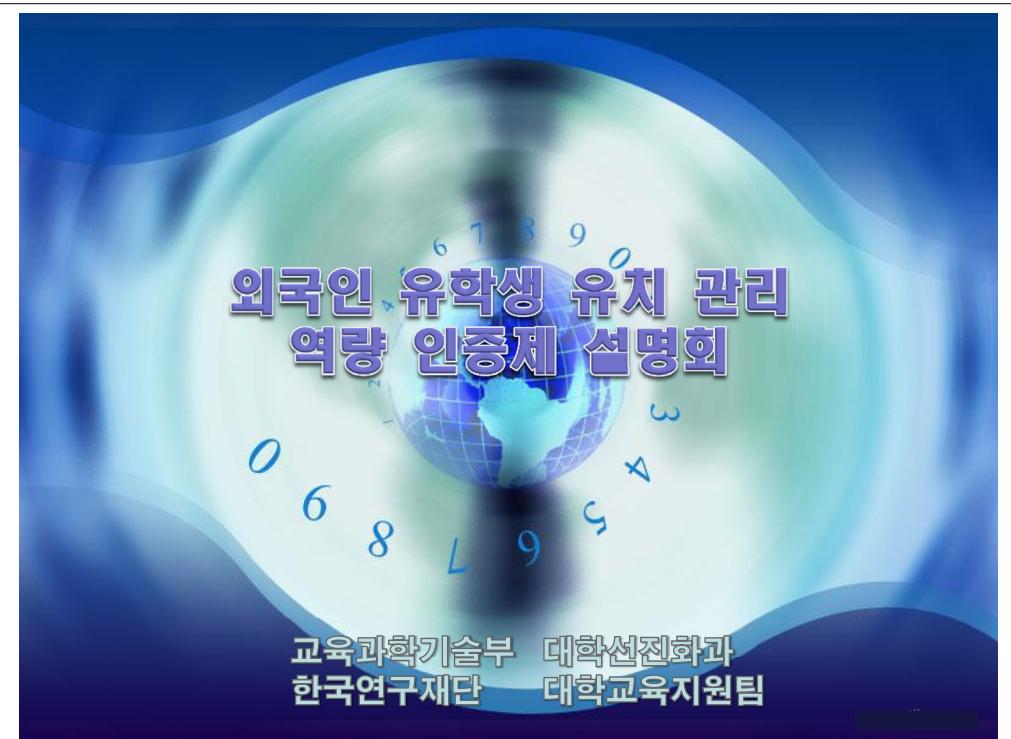
-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확실히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4일에는 수도권 대학을 돌며 상습적으로 노트북을 훔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7년 5만여 명이던 유학생이 지난해에는 9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탓입니다.

유학생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 문제가 불거진 OO대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부록 10. 유학생 유치 · 관리
인증제 설명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지원팀



[목 차]

1. 인증제 추진배경

- 2. 인증제 운영계획
 - 1) 인증제 개요
 - 2) 추진경과
 - 3) 추진방식
 - 4) 인증제 운영
 - 5) 인증결과의 활용 및 관리

3. 인증지표 상세자료

- 1) 지표개요
- 2) 자체평가보고서

4. 향후 추진 일정

5. 질의 및 응답



외국인 유학생 유지 관리 역량 인증제



1. 추 진 배 경



- 글로벌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인적자원 감소에 따른 해외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의 중요성 증대
 - 글로벌시대, 빈번해진 인적자원 이동으로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 심화

* 일본(‘20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중국(‘20년까지 유학생 50만명), 싱가포르(‘15년까지 유학생 15만명), 한국(‘12년 유학생 10만명) 유치 목표

* 호주 : CRICOS 및 PRISOM 시스템 운영(해외유학생 통합 관리 시스템)
 네덜란드 : 외국인 유학생 행동지침 시행
 영국/프랑스 :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지표 시행(대학의 자율적 결정으로 지침 준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1. 추 진 배 경



-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부재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우려
 -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와 한류확산,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유학생 수	16,832명	22,526명	32,557명	49,270명	63,952명	75,850명	83,842명	89,537명
증가율	-	33.8%	44.5%	51.3%	29.8%	18.6%	10.5%	6.8%

유학생수 증가 추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 119 -

1. 추진 배경

BUT!!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 부적응 및 중도 탈락, 불법체류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

-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우수인재 유치에 있어 경쟁 국가에 불리해질 우려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 知韓·親韓 인재 육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외국인 유학생 범죄 늘고 있지만…뾰족한 대책 없어

'12.3.9 MBN TV' | 기사전송 2012-03-09 22:04 | 최종수정 2012-03-09 23:51 | 관심지수 0 | +가 | -가

"한국 찾는 유학생 증가세 둔화 우려"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2-02-09 16:45 | 김종설 경희대 국제교육원장을 9일 제주 리마다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이하 한대협) 주최 워크숍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많은 나라가 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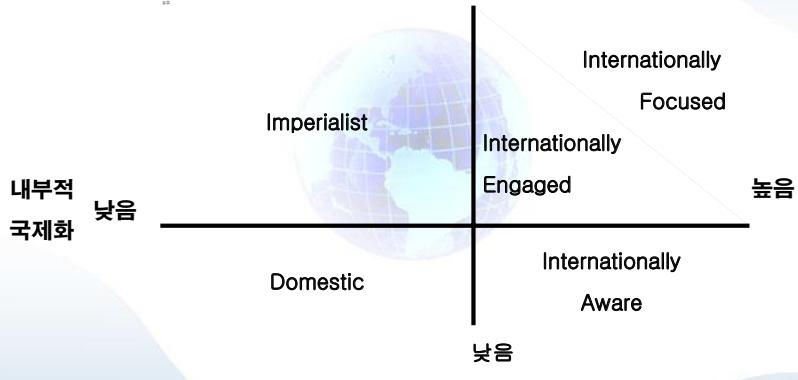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교육부 기준으로 '스튜디 코리아' 등 유학생 유치정책에 따라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2005년 3만2천537명, 2008년 6만3천952명, 2010년 8만3천537명 등으로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지만 작년에는 8만9천537명으로 6.8% 높어나는 데 그쳤다.

한대협 회장이기도 한 김 원장은 "미국, 호주 등 경쟁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첫 인상이 되는 한국어교육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1. 추진 배경

국제화의 유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1) 인증제 개요

추진목적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인증제 대상

국내 396개 고등교육기관
(4년제 236개*, 전문대학 160개 포함)

- ❖ 문교, 캠퍼스를 별도 포함하고,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1) 인증제 개요

기본골자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우수대학으로 인증
-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차이점을 평가방식에 반영
- 인증 대학에 한하여 GKS 사업(학부) 참여자격을 제공하고, 인증결과를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하여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1) 인증제 개요

추진체계

인증위원회 (15인이내)

- 구성: 참여부처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교과부 및 법무부 담당과장
- 역할: 인증평가단의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인증평가단

- 구성: 부처 실무자, 운영기관 책임자 및 담당자, 평가위원 등
- 역할: 인증 지표개발 및 기준 검토, 서류·현장 평가수행 및 평가 결과 협의, 업무처리절차, 인증대학 지원방안, 컨설팅 수행 등

시행기관 (연구재단)

-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 기관으로 지정 가능
- 인증제 운영 실무업무 지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2) 추진경과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유학생 유치, 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11가지 주요 정책방안 마련
 -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 ◆ '11년도 인증제 시행('11.5~12)
 - 인증위원회 지표 TF 중심 정량 정성지표 개발('11.5~9)
 - 지표 및 평가방식(안) 의견수렴을 위한 대학 설명회 개최('11.8~9)
 - '11년도 인증신청 공고 및 정량평가 실시('11.9~10)
 - 정량평가 결과 상위 5% 대학, 하위 15% 대상 정성평가 실시('11.10~12)
- ◆ '11년도 인증제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11.12~ '12.3)
 - '11년도 인증제 시행 결과발표('11.12월말)
 - '11년도 인증대학에 대한 GKS 장학생 우선 배정 및 인증서, 인증마크 부여 ('11.12~ '12.3)
 - '11년도 하위대학에 대한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제한 조치 및 개선계획 보고서 검토('12.1~ '12.3)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신청자격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 신청자격 미부여
-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에는 인증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자격 미부여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3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

※ '11년도에는 4년제 138개, 전문대학 44개(총 182개)가 인증가능대학에 해당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전년대비 개선사항

평가방식

상대평가



절대평가

지표보완

- 어학능력에 한국어 능력 외에 영어공인능력에 대한 평가 포함
- 2단계 평가 주요지표 중 **중도탈락률**을 법무부의 불법체류율과 보완하여 사용
- 기숙사 제공률 평가시 1학년 신입생에 한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평가함

특성화

-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대학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1단계 정량평가

- 8개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
 -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 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 부여
- ❖ 6개 지표는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하고, 2개 지표는 대학이 인증신청시 제출한 자료 및 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하여 활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2단계 절대지표평가

- 절대지표 중 상당부분을 충족(또는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학 및 비자제한대학 후보군으로 선정
 - 절대지표 6개 제시,
중도탈락률 20%(불법체류율 10%)의 경우 인증
신청자격제한 요건에 해당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2단계 절대지표평가

- 4년제
 - 인증을 위해서는 절대지표 6개 중 5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비자제한은 기본적 절대지표 이외에 4개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후보군에 포함
- 전문대학
 - 인증을 위해서는 절대지표 5개 중 4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비자제한은 기본적 절대지표 이외에 3개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후보군에 포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2단계 절대지표평가

◆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 4년제 대학

절대지표	인증대학	비자제한대학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②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95% 이상
③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④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⑤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
⑥ 언어능력(토픽 4급, 영어)	30% 이상	10% 이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2단계 절대지표평가

◆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 전문대학

절대지표	인증대학	비자제한대학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0% 이상
② 재정건전성	80% 이상	60% 이하
③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60% 이하
④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
⑤ 언어능력(토픽 3급, 영어)	30% 이상	10% 이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3단계 방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도 제고

3단계 위원회 최종평가

-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위원회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대학 및 하위대학을 선정
 - ❖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서면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대학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3) 추진방식 : 인증제 신청자격 및 추진방식

4년제 대학/전문대학

하위대학

실태조사
(법무부
교과부
공조)

↓
시정명령/
비자제한

신청

신청자격제한

- 재정지원
제한대학
- 중도탈락률
20% 이상
- 유학생
일정수 미만
실익없음

인증대상

- 1단계 정량평가(상위 70% 이상)
- 2단계 절대지표평가(ex. 6개 중 5개 충족)
- 3단계 위원회 최종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현장, 서면)

인증 (Pass / Fail)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4) 인증제 운영

인증 보증기간 및 재인증

-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만료 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쳐 재인증
 - ❖ 인증 가능은 3년이나 인증을 통과한 대학이라도 매년 절대지표의 기준값을 충족해야 함

현장평가를 위한 인증평가단 및 실태조사단 구성

- 인증위원회 및 교과부, 법무부, 연구재단 등으로 평가단 구성
 -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일부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시 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 5개 권역에 대해 권역별로 위원 2인 및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4) 인증제 운영

인증 및 사후관리

- 3단계 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인증대학 및 하위대학을 선정
 - '12년 제시한 절대지표의 인증기준은 3년 동일로 유지하되, 하위 대학에 대한 기준은 1년 단위로 변경
- 하위대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른 향후 1년간의 실적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
 - 부실 운영사례 적발 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5) 인증결과의 활용 및 관리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센티브) 인증평가 결과를 GKS, 유학박람회, 대학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지원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
- (제재)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를 위해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제한 실시

인증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 국내 및 외국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 결과 제공
- 인증결과 공개로 대학의 자율관리역량 제고를 유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 인증제 운영계획



5) 인증결과의 활용 및 관리

대학알리미(‘12년 영문, ‘13년 중문사이트 구축), 한국유학종합시스템(11개 언어) 등 교과부 공식 사이트 등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명시

대학알리미 :
www.academyinfo.go.kr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www.studyinkorea.go.kr



인증마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4년제 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공시항목)	배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②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4년제 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공시항목)	배점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교류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5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을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4년제 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률) 중도탈락 학생 수 /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비-2.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전체 유학생 수)	4-비. 외국인 학생 현황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4년제 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장학 재단 조사)	20
8	유학생 속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신입생 유학생 수) / 전체 신입생 유학생 수 × 100(%)	4-비.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 학생 통계, 사학진흥재단 조사)	10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전문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비중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②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전문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비중
3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수와 총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총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총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 학생의 정원 내 총원을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전문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비중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률) 중도탈락 학생 수 /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전체 유학생 수)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 전문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비중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장 학재단 조사)	20
8	유학생 속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신입생 유학생 수) / 전체 신입생 유학생 수 × 100(%)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2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사학진흥재 단 조사)	1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1) 지표개요(정량지표 상세내역)

공시자료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12년 4월 기준)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1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11년도 기준)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1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11년도 기준)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12년 4월 기준)
5.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1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11년 기준)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12년 4월 기준)

대학제출자료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12년 1,2학기 기준)
8. 유학생 신입생 숙소 제공 비율('12년 9월 10일 기준)
9. 유학생 의료보험가입률('12년 9월 10일 기준)
10. 유학생 언어능력(한국어, 영어)('11년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2) 자체평가보고서

연번	영역	세부목차(30p 이내)
1	대학 국제화의 비전과 특성	1-1. 대학국제화의 비전 - 국제화와 대학발전의 연계방안 - 유학생 유치전략 1-2. 대학의 특성화 - 특화된 국가 또는 분야 -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사례
2	유학생 선발	2-1. 학생입학시 수학능력을 검증하고 있는가? 2-2. 공식절차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가? - 외국인 유학생 충원을 위한 합리적인 선별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2) 자체평가보고서

연번	영역	세부목차(30p 이내)
3	학사관리	<p>3-1. 출석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은 어떠한가? <p>3-2. 학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분포표 :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가? * Random sampling을 통해 현장평가 가능 - 강의계획표, 학사일정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3. 인증지표 상세자료



2) 자체평가보고서

연번	영역	세부목차(30p 이내)
4	유학생 관리 및 지원	<p>4-1. 학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 - 진로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가? <p>4-2. 상담센터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가? - 상담센터 및 전문 상담원이 있는가? <p>4-3. 졸업이후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취업, 동문회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p>4-4. 적응지원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 학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기점 부여 가능
5	기타	대학특이사항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